

정책연구 2007-21

핵심산업육성촉진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방안

2007.12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계획은 2005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으로 구체화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핵심산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는 제시된 4대 핵심산업(관광, 청정1차산업, 교육, 의료)과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IT, BT) 육성을 도모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보완계획에서는 4+1 핵심산업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과 계획 중에서 4+1 핵심산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핵심산업이 활성화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단계 더 높은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도약하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핵심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보람스럽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용중인 투자진흥지구가 가시화되어 일부 사업은 착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핵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핵심산업 육성방안 연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참고가 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핵심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 12.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허 향 진

목 차

1. 연구의 개요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2
1.3 연구내용 및 방법	3
2. 핵심산업의 정의 및 현황	4
2.1 핵심산업의 정의	4
2.2 핵심산업 현황	5
1) 관광산업 현황	5
2) 교육산업 현황	8
3) 의료산업 현황	9
4) 청정1차산업	16
5) 첨단산업	20
3. 핵심산업 발전방안	28
3.1 관광산업	28
1) 외국 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 허용	28
2)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 등 관광제도 개선	28
3.2 교육산업	29
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성 확대	29
3.3 의료산업	30
1)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30
2) 제주형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30

3.4	첨단산업	31
3.5	청정1차산업	31
4.	관련계획 및 제도 검토	32
4.1	관련계획 검토	32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32
2)	2025광역도시기본계획	34
4.2	관련제도 검토	37
1)	지역특화발전특구	37
2)	투자진흥지구	42
3)	경제특구	46
4)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47
5)	산업개발진흥지구	51
5.	핵심산업 육성 방안	54
5.1	핵심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방안	54
5.2	제도·세제 측면 지원 방안	54
6.	결 론	57

표 차 례

<표 2.1> 월별·국적별 관광객수	5
<표 2.2> 숙박시설 현황	6
<표 2.3> 관광지·단지 사업추진 현황	6
<표 2.4> 일반관광시설 현황	7
<표 2.5> 골프장 현황	7
<표 2.6> 지역별 교육시설 및 재학생 현황	8
<표 2.7> 고등교육 현황(2004년)	8
<표 2.8>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9
<표 2.9> 지역별 병상분포 현황	10
<표 2.10> 제주지역 내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11
<표 2.11> 요양기관 유형별 분포	12
<표 2.12> 제주지역 내 보건기관 유형별 현황	12
<표 2.13> 제주지역 설립유형별 의료기관 현황	13
<표 2.14> 지역별 급여형태별 요양급여 실적	14
<표 2.15> 2004년 시도별·사망원인별 사망자수	15
<표 2.16> 제주지역 내 의원급 표방과목별 요양기관수	16
<표 2.17> 연도별 농가인구, 농가호수의 변화	16
<표 2.18> 농가소득의 변화 추이	17
<표 2.19> 작목별 재배면적의 변화	18
<표 2.20> 제주도 주요 작목별 특화계수의 연도별 변화	19
<표 2.21> 농산물 수출 현황	20
<표 2.22> 제주특별자치도 산업 현황	21
<표 2.23> 2차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21
<표 2.24> 제주도 제조업 현황	22

<표 2.25> 제주도 제조업의 전국대비 업종별 특화도	23
<표 2.26> 제주도 제조업 클러스터 현황	24
<표 2.27> 지역별 산업현황	26
<표 4.1> 우리나라 주요 지역활성화 정책의 개요	39
<표 4.2>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와의 비교	40
<표 4.3>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별	41
<표 4.4>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 특구의 내용	42
<표 4.5> 2007년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대상 사업장	44
<표 4.6>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 투자지역의 비교	45
<표 4.7> 타 경제특구의 투자지원세제	47
<표 4.8>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 내용	49
<표 4.9> 지역등급별 세제 혜택	50
<표 4.10> 시·도별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53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진행과정	3
<그림 2.1> 핵심산업의 내용	4
<그림 2.2> 관광관련 시설 현황	7
<그림 2.3> 산업별 총생산액의 추이	20
<그림 2.4> 제주특화 건강·뷰티생물산업의 개념도	25
<그림 2.5> 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25
<그림 2.6> 지역별 전략산업 현황	27
<그림 4.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체계	33
<그림 4.2> 계획의 목표와 추진 전략	36
<그림 4.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 및 목적	37
<그림 4.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기본이념과 추진방향	38
<그림 4.5> 권역별 주요 분석지표 비교	48
<그림 4.6> 권역별 법인세수 규모 비교	48
<그림 5.1> 투자진흥지구 개발절차	55

1. 연구의 개요

1.1 연구배경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의 편의가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종래의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및 재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¹⁾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법률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흡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6년 7월 1일에 새롭게 출범하였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아시아 성장지역에 비해 조세·기본인프라·접근성 등에 있어 우위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타지역의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역특구 등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정부에서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청정1차 산업이 선정되어 있다. 관광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교육 및 의료산업 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1) 최성근,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국제 학술대회

따라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추진사업에서는 제주의 교육,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산업육성촉진지구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핵심산업으로 일컬어지는 5대산업의 입지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용방안 및 유사한 제도인 산업진흥개발지구 등의 제도를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확대적용 및 핵심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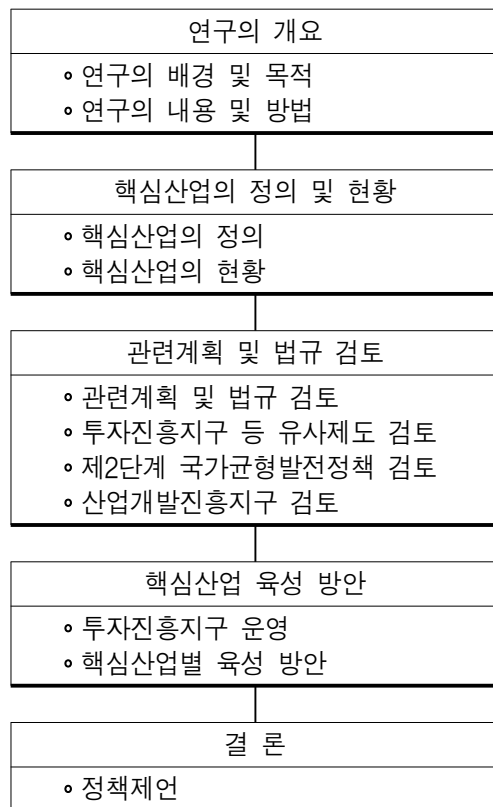
현재 운용중인 투자진흥지구의 경우는 대부분이 관광관련 사업이며 산업부분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청정1차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규정이 필요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어떤 지원방안이 필요한지를 모색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별 제도개선에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지정을 받으면 일정 자본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핵심산업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자본이 도내로 투자되고 다수의 기업이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 국제도시, 타지역의 경제특구, 지역특구 등과 같은 국내유사제도 검토하여 핵심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마련할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핵심산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1.3 연구내용 및 방법

우선 현재의 산업단지 제도를 분석한다.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등과 같은 산업법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제주에 해당되는 핵심산업 관련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핵심산업과 관련하여 관련계획이나 상위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핵심산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핵심산업과 관련하여 각종 산업육성지구의 통합운영이 방안과 교육과 의료산업을 육성지구로 조성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시도한다.



<그림 1.1> 연구의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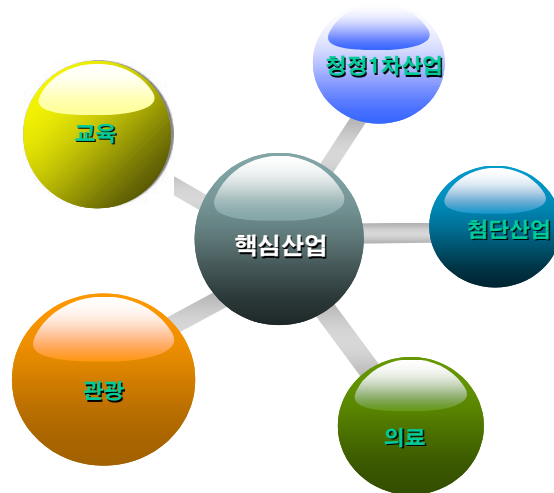
2. 핵심산업의 정의 및 현황

2.1 핵심산업의 정의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2003~2011)에서는 관광, 교육, 첨단산업 등을 핵심분야로 선택하여 집중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산업은 2005년 10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 4대 핵심산업으로 관광, 청정1차산업, 교육, 의료산업과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IT, BT) 육성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시화되었다. 또한 4+1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이 2006년에 수립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핵심산업 육성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후속조치 및 핵심산업 육성계획(2006. 4. 3)에서도 핵심산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산업은 현재 관광, 교육, 청정1차산업, 첨단산업, 의료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산업으로 선정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분야의 경우는 투자진흥지구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2.1> 핵심산업의 내용

2.2 핵심산업 현황

1) 관광산업 현황

2005년 기준 연간관광객은 502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4%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이 중 내국인은 464만명(92.5%), 외국인은 38만명(7.5%)에 달한다. 계절별로는 여름이 가장 많고(27.7%), 겨울이 가장 적음(20.2%), 월별로는 8월(10.7%)이 가장 많고, 12월(6.3%)이 가장 적었다.

관광객은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의 지정 및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등과 같은 계기가 도내 관광의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월별·국적별 관광객수

(단위 : 명, 백만원)

	관 광 객 수			관 광 수 입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화	외화
2000	4,110,934	3,822,509	288,425	1,497,537	1,087,670	409,867
2001	4,197,574	3,907,524	290,050	1,495,405	1,091,651	403,754
2002	4,515,515	4,226,019	289,496	1,526,556	1,152,503	374,053
2003	4,913,390	4,692,373	221,017	1,566,128	1,307,242	258,886
2004	4,932,512	4,603,297	329,215	1,678,748	1,307,955	370,793
2005	5,020,275	4,641,552	378,723	1,720,166	1,303,061	417,105
1월	370,922	354,420	16,502	124,542	103,827	20,715
2월	330,686	306,278	24,408	117,185	88,634	28,551
3월	346,859	325,462	21,397	118,311	89,896	28,415
4월	506,512	474,465	32,047	167,202	132,710	34,492
5월	497,995	462,165	35,830	159,889	122,435	37,454
6월	408,058	375,094	32,964	140,277	104,695	35,582
7월	443,477	405,427	38,050	154,682	114,393	40,289
8월	537,131	498,731	38,400	185,047	142,982	42,065
9월	359,857	324,351	35,506	129,859	89,995	39,864
10월	489,782	442,292	47,490	172,845	123,959	48,886
11월	414,330	381,731	32,599	148,004	110,766	37,238
12월	314,666	291,136	23,530	102,319	78,768	23,551

자료 : 제주통계연보(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숙박시설로는 2006년말 기준 총 758개소에 22,937실의 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숙박업소는 80개소 9,833실(42.8%), 여관 449개소 8,299실(36.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객실수의 72.3%, 서귀포시의 경우 27.7%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제주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2.2> 숙박시설 현황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계		758	22,937	568	16,590	190	6,347
관광 숙박업	소 계	80	9,833	55	6,327	25	3,506
	종합관광호텔	47	6,196	33	4,036	14	2,160
	전통호텔	1	26	-	-	1	26
	가족호텔	2	62	1	30	1	32
	휴양콘도미니엄	30	3,549	21	2,261	9	1,288
휴양펜션업		36	339	19	183	17	156
일반호텔		80	3,334	75	3,144	5	190
여관		449	8,299	327	5,971	122	2,328
여인숙		113	1,132	92	965	21	167

자료 : 제주도 2007년 행정총람(2006년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시설로는 2004년말 현재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 35.2km²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사업자 미지정지구 6개소 8.6km²(24%), 운영중인 관광지는 9개소 7.1km²에 달한다.

<표 2.3> 관광지·단지 사업추진 현황

구 분		개소	면적(km ²)
사업승인	운영 중	9	7.1
	개발 중	4	8.6
사업예정자 지정		4	10.2
사업예정자 미지정		6	9.3
합 계		23	35.2

자료 : 제주도 2005년 행정총람(2004년 말 기준)

일반관광지는 총 29개소가 있으며 공공운영 13개소와 민간운영 16개소,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 5개소, 서귀포시 동지역 8개소, 제주시 읍·면지역 8개소, 서귀포시 읍·면지역 8개소가 있다.

<표 2.4> 일반관광시설 현황

구 분	개소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공공 관리	13	3	4	3	3
민간 운영	16	2	4	5	5
계	29	5	8	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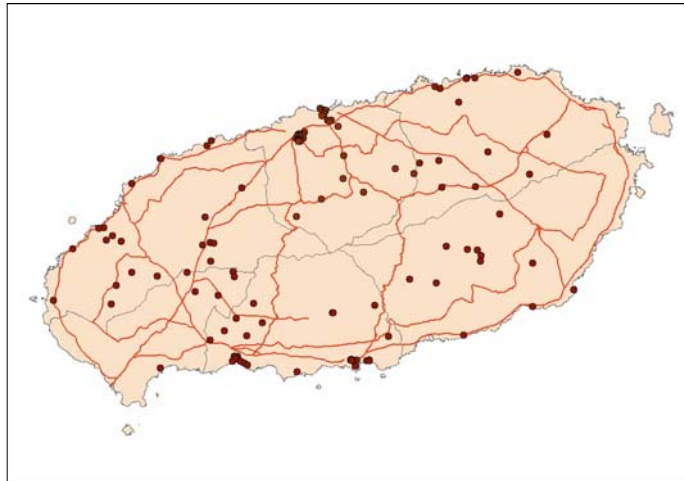
자료 : 제주도 2005년 행정총람(2004년 말 기준)

2006년 9월 기준 골프장은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19개소는 계획 중이며, 면적으로는 42.4km²가 지정되었고, 이 중 53.5%인 22.7km²가 개발 완료되었다.

<표 2.5> 골프장 현황

구 분	개소	면적(km ²)
운 영 중	18	22.7
승 인	15	15.2
절 차이행	3	3.6
예정자 지정	1	0.9
계	37	42.4

자료 : 제주도 내부자료(2006년 9월 현재)



<그림 2.2> 관광관련 시설 현황

2) 교육산업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대학교를 비롯하여 6개의 대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제주대학교를 비롯하여 5개가 제주시에 입지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전체 30개 중에서 20개의 학교가 제주시에 입지하고 있고, 서귀포시에 10개(33.3%)의 학교가 각각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학교(유치원 포함)는 총 292개교이며, 학생(유치원 포함)은 102,337명이다.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공립학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이 없으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 2.6> 지역별 교육시설 및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총 수	학교수	292(12)	178(10)	114(2)
	학생수	102,337	77,878	24,459
유 치 원	학교수	111	68	43
	원아수	5,270	4,417	853
초등학교	학교수	106(12)	61(10)	45(2)
	학생수	50,047	38,000	12,047
중 학 교	학교수	42	27	15
	학생수	25,667	19,456	6,211
고등학교	학교수	30	20	10
	학생수	20,936	15,693	5,243
특수학교 ¹⁾	학교수	3	2	1
	학생수	417	312	105

※ ()안은 분교장 수이며 본수에 불포함됨. (2006. 4. 1 현재)

주 : 1) 특수학교 : 제주영지학교, 제주영송학교, 제주온성학교

<표 2.7> 고등교육 현황(2004년)

구 분	학교수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비 고
전문대학	3	75	11,323	323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
교육대학	1	12	686	29	제주교육대학
대 학	2	69	16,042	490	제주대학교, 탐라대학교

자료 : 제주도청 홈페이지

3) 의료산업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병원 이상 의료시설은 10개소가 있으며, 이 중 8개의 병원이 제주시에 입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는 대조적으로 보건시설들은 제도적인 입지정책 추진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입지하고 있다. 전체 16개의 보건소·지소 중 제주시지역 비중은 56.3%이다.

노인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현재 2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어 제주사회의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공적 의료기관의 노인전문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일반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의료원 등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노인 전문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으로의 전략적 전환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양립할 수 있는 행정지원 및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지역거점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마련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시설 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으로 기능전환을 모색하고,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장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2.8>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병상수))

구 분	병원			보건시설		
	종합병원	병원2)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 주 시	5 (1,405)	2 (380)	223 (563)	2	7	23
서귀포시	1 (220)	1 (69)	64 (112)	2	5	23
합 계 ¹⁾	6 (1,625)	3 (449)	287 (675)	4	12	46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6(2005년말 기준)

- 1) 보건의료원 이하 제외
- 2) 군인병원 제외

□ 제주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및 주요특징

제주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2004년 2,666병상으로, 이들 병상의 대부분이 종합병원 및 병·의원 병상이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전무하다. 병원급 이상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제주가 4.9로 서울 및 인천, 경기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나, 부산(5.9), 광주(7.0), 경북(5.2), 경남(7.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2.9> 지역별 병상분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a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인구천명당 병상수 ^b (병원급이상)
서울	61,201	17,294	12,346	12,081	16,804	-	4.1
부산	28,696	3,432	7,051	11,215	6,167	-	5.9
대구	16,942	2,588	3,274	6,380	4,000	-	4.8
인천	17,676	1,983	3,632	3,925	7,284	-	3.7
광주	13,555	1,616	2,913	5,327	3,130	-	7.0
경기	60,635	1,033	14,460	21,301	22,093	53	3.6
경북	18,946	-	6,434	7,884	3,729	72	5.2
경남	27,888	730	5,225	16,597	4,916	50	7.1
제주	2,666	-	1,494	431	683	-	4.9

자료 : 2004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

a. 합계는 치과병원 및 의원, 한방병원 및 의원, 조산소의 병상수를 합한 수치임.

b. 인구 천명당 병상 수 =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병원의 병상합계/해당연도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

제주지역 내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을 연도별,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없으며, 종합병원이 6개소 총 1,494병상, 병원이 3개소 총 419병상, 의원이 272개소 총 683병상이다.

<표 2.10> 제주지역 내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구 분	합계 ^a	종합병원	병원	의원
1998	344 (1,782)	5 (1,203)	-	180 (572)
1999	376 (2,168)	6 (1,484)	1 (69)	199 (554)
2000	399 (2,219)	6 (1,504)	1 (69)	211 (585)
2001	422 (2,146)	6 (1,455)	1 (69)	231 (561)
2002	458 (2,508)	6 (1,436)	2 (354)	259 (639)
2003	483 (2,581)	6 (1,476)	2 (354)	266 (672)
2004	495 (2,666)	6 (1,494)	3 (419)	272 (683)

자료 : 제주통계연보, 2005

a : 합계는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 조산소의 병원 수와 병상수를 합한 수치임.

* 보건기관은 앞서 공공의료체계 현황분석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였음.

□ 제주지역 공공의료 현황 분석

국내 공공의료 체계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내 요양기관의 유형별 분포 중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보건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 병원, 국립의료원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²⁾, 제주지역의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2) CBS, 2005. 6. 13

<표 2.11> 요양기관 유형별 분포

(단위 : 개)

구분	적용인구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인구천명당 보건기관수
합계	47,392,052	290	1,107	25,180	3,424	0.072
서울	10,028,344	62	139	6,344	25	0.002
부산	3,519,049	27	105	2,051	29	0.008
대구	2,426,374	12	77	1,371	26	0.011
인천	2,549,708	13	38	1,241	57	0.022
광주	1,337,520	15	39	797	15	0.011
대전	1,408,855	8	36	938	20	0.014
울산	1,072,719	3	40	502	28	0.026
경기	10,530,742	45	196	4,949	328	0.031
강원	1,451,939	16	35	653	243	0.167
충북	1,435,736	11	30	744	269	0.187
충남	1,886,476	9	48	935	409	0.217
전북	1,758,102	11	65	1,012	400	0.228
전남	1,820,104	18	66	868	561	0.308
경북	2,568,802	15	77	1,111	553	0.215
경남	3,062,956	20	111	1,374	399	0.130
제주	534,626	5	5	290	62	0.116

자료 : 2005 건강보험주요통계, 건강보험공단.

* 인구 천명당 보건기관 수 = (보건기관 합계/지역별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

제주지역의 보건기관은 62개소이며, 이는 인구 천 명당 0.12개로 전국에서 보건기관의 수가 경북, 경남에 이어 여덟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요양기관에서 보건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5%로, 제주 지역의 기타 공공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2> 제주지역 내 보건기관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 의료기관 대비 보건기관 비율
1998	-	4	12	46	18.0%
1999	-	4	12	46	16.5%
2000	-	4	12	45	15.3%
2001	-	4	12	47	14.9%
2002	-	4	12	47	13.8%
2003	-	4	12	46	13.0%
2004	-	4	12	46	12.5%
2005	-	2	5	23	

자료 : 제주통계연보 2006

2004년 현재 제주지역내 보건기관 유형별 현황을 보면 보건소 4개소,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46개소이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보건기관의 비율은 1998년 18%에서 2004년 12.5%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보건기관의 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타 의료기관의 수 증가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전체 의료기관 대비 보건기관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보건기관 뿐 아니라 국립 및 공립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3> 제주지역 내 설립유형별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국립	공립	학교법인	특수법인	종교법인
	750	-	66	1	-	-
구분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개인
	1	5	1	-	6	670

자료 : 2003 건강보험주요통계, 건강보험공단.

□ 제주지역의 질환별 수요분석

제주지역의 질환별 수요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의 2004년 요양급여 실적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한 해 총 진료비는 약 2,445억 원이며, 수진자의 입원 및 내원일수는 총 9,171,970일, 진료실인원은 약 50만 명으로 총 진료비를 진료실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의료이용량을 추정해 본 결과, 1인당 의료 이용비는 약 59만 원이다. 총 진료비 및 진료실인원은 서울 및 기타 대도시 지역이 훨씬 많으나, 1인당 의료이용량은 타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이 가장 높다.

<표 2.14> 지역별 급여형태별 요양급여 실적

(단위 : 천원, 일, 명)

구 분	총진료비 (천원)	공단부담액 (천원)	내원일수 (일)	진료실인원 (명)	일인당 의료이용량(원)
계	24,861,515,311	17,988,570,493	727,693,921	43,018,503	578,000
서울	5,132,273,478	3,672,150,848	143,012,293	9,588,095	535,000
부산	1,910,366,204	1,384,720,886	57,589,126	3,385,154	564,000
대구	1,226,900,008	887,003,441	36,553,530	2,369,001	518,000
인천	1,209,792,741	872,858,411	36,000,399	2,432,728	497,000
광주	679,461,737	490,803,755	19,937,305	1,319,879	515,000
대전	738,491,169	536,834,445	22,698,135	1,400,128	527,000
울산	522,358,390	378,482,010	16,601,425	1,039,800	502,000
경기	5,158,484,738	3,718,787,554	150,549,874	10,077,552	512,000
강원	792,426,451	575,688,703	21,674,525	1,375,305	576,000
충북	782,557,985	572,903,966	23,625,807	1,391,868	562,000
충남	1,114,260,433	814,389,836	33,014,270	1,830,033	609,000
전북	1,088,058,893	795,494,713	32,149,907	1,739,517	625,000
전남	1,139,072,589	835,455,019	33,078,817	1,786,234	638,000
경북	1,426,365,830	1,038,556,433	41,325,587	2,472,750	577,000
경남	1,633,799,074	1,192,075,690	49,911,432	2,942,891	555,000
제주	303,934,618	219,834,885	9,916,753	517,155	588,000
기타	2,910,974	2,529,897	54,736	20,036	145,000

자료 : 2005 건강보험주요통계, 건강보험공단.

* 일인당 의료이용량 = 총 진료비/진료 실인원

2004년 기준으로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신생물에 의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순환기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2004년 시도별 ·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사망원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총 사망자 수	37,871	18,594	11,753	10,966	5,979	5,905	3,941	2,830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888	514	234	226	115	104	83	61
신생물	10,706	5,248	3,225	2,903	1,642	1,618	1,083	722
혈액 및 조혈기관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91	34	19	17	8	9	12	2
내분비, 영양 및	1,681	1,027	657	594	337	274	231	136
정신 및 행동 장애	659	437	246	217	109	103	65	58
신경계통의 질환	584	309	277	174	135	96	63	49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	-	-	-	-	-	-	-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	-	-	-	-	-	-	-
순환기계통의 질환	9,526	5,220	2,745	2,790	1,189	1,470	945	622
호흡기계통의 질환	2,036	902	658	603	278	349	229	137
소화기계통의 질환	1,780	1,072	572	580	276	272	203	141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98	17	4	20	7	5	7	6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 조직의 질환	176	99	63	65	37	26	24	25
비호흡식기계통의 질환	626	320	142	142	46	85	35	32
임신, 출산 및 산후기	6	7	1	4	4	-	1	2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169	93	115	72	38	29	34	16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142	72	51	37	19	23	16	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4,239	972	1,261	1,187	964	658	359	444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4,387	2,231	1,443	1,315	739	775	532	362
사망원인 미상	77	20	40	20	36	9	19	7

자료 : 사망원인(103항목)시도별 사망자수, 통계청 2004

질환별 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제주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방과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387개소로 그 중, 치과가 117개로 전체 의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과 77개소(약 20%), 내과 34개소(약 9%), 산부인과 28개소(약 6.5%), 소아과 22개소(약 5.7%)의 순이었다. 의원의 표방과목이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반영한다고 가정해보면, 제주도민의 의료수요는 치과 및 일반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순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2.16> 제주지역 내 의원급 표방과목별 요양기관수

과목구분	개소	비율(%)	과목구분	개소	비율(%)
내과	34	8.8	신경과	2	0.5
정신과	7	2	일반외과	10	2.6
정형외과	17	4.4	신경외과	5	1.3
흉부외과	-	-	성형외과	4	1.0
마취과	6	1.6	산부인과	28	6.5
소아과	22	5.7	안과	13	3.4
이비인후과	15	3.9	피부과	6	1.6
비뇨기과	10	2.6	진단방사선과	3	0.8
해부병리과	-	-	임상병리과	-	-
결핵	-	-	재활의학과	7	1.8
가정의학과	4	1.0	치과	117	30.2
일반과	77	19.9	계	387	100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05, 건강보험관리공단

4) 청정1차산업

□ 농가·경지면적 및 소득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가인구는 1985년 18만5,339명이었던 것이 2004년 현재 10만9,955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비율은 2004년 현재 20.5%로 전국의 7.1%의 약 2.9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가호수는 동기간 동안 4만2,278호에서 3만6,366호이며, 호당인구는 1985년 전국의 4.4명과 같았던 것이 2004년 현재 3.0명으로 전국의 2.8명에 비해 0.2명이 많다.

<표 2.17> 연도별 농가인구, 농가호수의 변화

연 도	농가인구(명)		농가인구비율(%)		농가호수(호)		호당인구(명)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국
1985	185,339	8,521,073	37.9	20.9	42,278	1,925,869	4.4	4.4
1990	163,986	6,661,322	31.9	15.5	40,147	1,767,033	4.1	3.8
1995	145,579	4,851,080	28.0	10.8	39,781	1,500,745	3.7	3.2
2000	129,152	4,031,065	24.6	8.6	39,114	1,383,468	3.3	2.9
2004	109,955	3,414,551	20.5	7.1	36,366	1,240,406	3.0	2.8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호당 농가소득은 1993년 이래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감귤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1997년과 1999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역 농산물가격 불안에 의한 농가소득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호당 농외소득은 1993년 이래 1997년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2.18> 농가소득의 변화 추이

(단위 : 만원, %)

년 도	전 국			제 주 도			전국 대비	
	농가소득 (A)	농외소득 (B)	농외소득 비중	농가소득 (C)	농외소득 (D)	농외소득 비중	농가소득 (C/A)	농외소득 (D/B)
1993	1,693	504	29.8	2,113	543	25.7	124.8	107.8
1994	2,032	618	30.4	2,217	645	29.1	109.1	104.3
1995	2,180	693	31.8	2,722	751	27.6	124.8	108.3
1996	2,330	749	32.1	2,990	801	26.8	128.4	107.0
1997	2,349	828	35.2	2,238	772	34.5	95.3	93.2
1998	2,049	698	34.0	2,596	997	38.4	126.7	142.9
2000	2,307	743	32.2	2,473	873	35.3	107.2	117.5
2004	2,900	954	32.9	3,900	1,696	43.5	134.5	177.8
'93~'04 평균	2,230	723	32.3	2,656	885	32.6	122.2	123.7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 작목별 재배면적 변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 이후 제주도 농작물의 재배면적의 변화를 보면, 그 동안 비중이 높았던 맥류, 잡곡, 콩, 고구마, 유채, 참깨와 일부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감귤, 감자, 화훼류와 함께 당근, 마늘, 양파, 쪽파 등의 월동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에 머물러 연간 총 작물 재배면적은 1990년의 6만7,065ha에서 2004년에 6만2,216ha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도의 경지이용률이 122.4%에서 1999년에는 105.5%로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표 2.19> 작목별 재배면적의 변화

(단위 : ha,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4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식량작물	58,034	75.5	39,144	54.6	28,772	42.9	15,227	23.2	13,903	22.3
미 곡	2,001	2.6	2,037	2.8	797	1.2	205	0.3	1,071	1.7
맥 류	25,032	32.3	15,526	21.7	9,322	13.9	2,576	3.9	2,703	4.3
잡 곡	8,447	10.9	1,493	2.1	1,752	2.6	486	0.7	1,039	1.7
두 류	10,550	13.6	8,403	11.7	10,332	15.4	5,942	9.0	4,212	6.8
(콩)	9,610	12.4	7,748	10.8	8,722	13.0	5,597	8.5	4,007	6.4
서 류	12,274	15.8	11,685	16.3	6,569	9.8	6,018	9.2	4,876	7.8
(고 구 마)	12,178	15.7	10,580	14.8	3,790	5.7	1,095	1.7	66	0.1
(감 자)	146	0.2	1,105	1.5	2,779	4.1	4,923	7.5	4,812	7.7
채 소 류	2,004	2.6	3,497	4.9	7,110	10.6	16,269	24.8	18,211	29.3
(양 배 추)	52	0.1	197	0.3	783	1.2	2,255	3.4	2,047	3.3
(당 근)	4	0.0	494	0.7	1,052	1.6	2,541	3.9	1,172	1.9
(마 늘)	203	0.3	560	0.8	1,921	2.9	3,741	5.7	4,020	6.5
(양 파)	184	0.2	251	0.4	432	0.6	793	1.2	851	1.4
(쪽 파)					244	0.4	1,859	2.8	975	1.6
과 수	5,002	6.4	14,164	19.8	20,255	30.2	27,806	42.3	22,701	36.5
(감 굴)	5,002	6.4	14,095	19.7	19,414	28.9	26,813	40.8	22,048	35.4
특용작물	12,275	15.8	14,854	20.7	10,683	15.9	3,638	5.5	3,031	4.9
(유 채)	10,440	13.5	8,150	11.4	5,200	7.8	1,737	2.6	1,139	1.8
(참 깨)	1,314	1.7	6,321	8.8	5,107	7.6	1,597	2.4	1,625	2.6
화 훼	11	0.0	31	0.0	245	0.4	169	0.3	265	0.4
총재배면적	77,326	100.0	71,690	100.0	67,065	100.0	65,713	100.0	62,216	100.0

자료 : 제주도 농수축산국, 내부자료.

□ 주요 작목의 특화 분석

1980~1999년까지의 특화계수³⁾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 특화품목(1이상의 값을 보이는 품목)은 마늘, 양파, 파, 당근, 무, 양배추, 맥주보리, 잡곡, 콩, 고구마, 감자, 유채, 참깨, 화훼, 감귤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특화계수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작목과 정책적 변수를 고려해 볼 때 향후 특화품목으로서의 중요도를 차지할 수 있는 품목은 마늘, 양파, 파(쪽파), 당근, 양

3) 특화계수 : 제주지역유채재배면적(조수입)/제주지역 총경지면적(총조수입),
전국 유채재배면적(조수입)/전국 총경지 면적(조수입)

배추, 감자, 화훼, 감귤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0> 제주도 주요 작목별 특화계수의 연도별 변화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근 채 류	마 늘	0.59	1.08	0.81	1.20	2.7	3.1	3.4	3.9	4.4	2.4
	양 파	1.27	1.70	1.10	1.66	1.5	2.1	1.7	2.1	1.8	1.7
	파	0.53	5.59	12.14	2.31	2.9	1.4	1.8	1.7	1.6	3.3
	무	0.44	0.34	0.51	0.52	0.8	1.0	1.4	2.6	3.3	1.2
	당 근	4.69	6.4	14.83	15.36	18.5	17.4	16.7	18.5	17.8	14.5
엽 채 류	배 추	0.38	0.47	0.97	0.52	0.5	0.4	0.7	0.7	0.5	0.6
	양 배 추	3.42	2.92	13.28	8.60	12.0	14.2	10.9	12.4	12.9	10.1
과 채 류	수 박	0.27	0.47	1.76	0.85	0.9	0.4	0.3	0.4	0.6	0.7
	토 마 토	0.85	0.74	0.52	1.13	0.3	0.2	0.2	0.2	0.1	0.5
	오 이	0.54	0.35	0.35	0.56	0.1	0.1	0.03	0.1	0.2	0.3
	호 박	0.94	0.61	0.37	0.24	0.2	0.1	0.2	0.3	0.6	0.4
식량작물	미 곡	0.06	0.04	0.02	0	0.006	0.02	0.02	0.02	0.03	0.02
	맥주보리	9.91	5.09	7.07	4.70	2.9	3.6	4.1	3.5	3.4	4.9
	잡 곡	1.11	1.32	1.66	1.29	0.6	0.8	0.9	1.0	1.1	1.1
	콩	1.60	1.53	2.01	2.50	2.1	2.2	2.4	1.9	1.5	2.0
	고 구 마	7.50	6.26	7.01	2.86	2.2	1.1	0.8	0.2	0.1	3.1
	감 자	1.15	1.44	4.62	7.59	5.3	5.7	5.4	5.2	6.3	4.7
특용작물	유 채	21.66	35.66	25.48	32.5	31.0	31.9	31.2	30.4	32.6	30.3
	참 깨	5.07	3.74	1.68	1.09	1.1	1.3	1.2	0.7	1.7	2.0
화 훼 류	화 훼	0.95	1.64	2.45	2.19	1.1	1.1	1.0	1.3	1.4	1.5
과 일 류	감 귤	38.80	37.58	35.06	32.87	31.9	32.1	31.5	30.4	32.8	33.0

□ 주요 농산물의 수출 현황

제주도산 화훼류 수출은 유리온실 등 최첨단 농업시설물에서 생산된 고품질 화훼류의 수출에 힘입어 2004년도에는 766만8천불을 수출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품목은 백합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화훼류 수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란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채소류의 수출은 2004년 493만6천불로 2000년에 72만불로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21>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 천\$)

구 분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계	3,787	10,339	15,918	15,932	15,137	18,865
감 쿨	1,128	5,915	11,828	6,905	4,019	5,478
백 합	-	1,109	1,620	3,081	5,486	6,981
당 근	298	299	-	4	0	10
양 배 추	239	975	153	470	585	1,386
아이리스	-	138	119	2	0	-
튜 울 립	-	20	64	6	0	-
장 미	-	42	92	118	8	-
양 란	46	188	1,072	1,794	579	562
토 마 토	146	170	149			4
기 타	1,930	1,483	666	3,552	4,460	4,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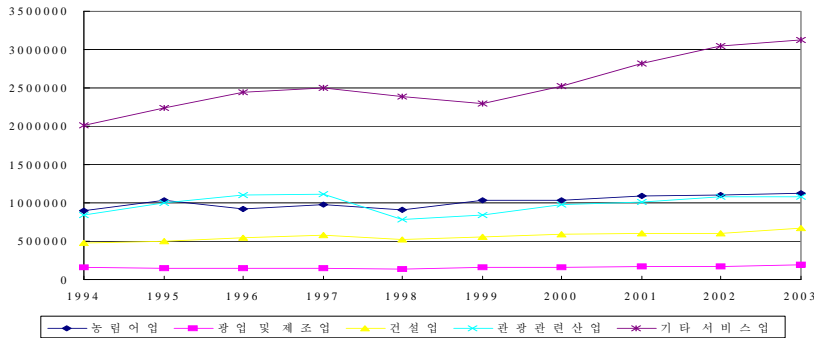
자료 : 제주도 내부자료, 2004.

주1 : 기타 : 파프리카, 흑대두, 참다래, 금굴, 국화, 단무지, 건당근 등

5) 첨단산업

□ 산업별 총생산액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10년간 산업별 지역총생산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가파르고, 농림어업, 관광관련산업, 건설업 등은 미약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광업 및 제조업은 제자리 걸음이다. '03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광업 및 제조업은 3.2%에 불과한 반면, 주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관련산업은 17.4%, 농림어업은 18.1%를 차지하고 있어 자립적 경제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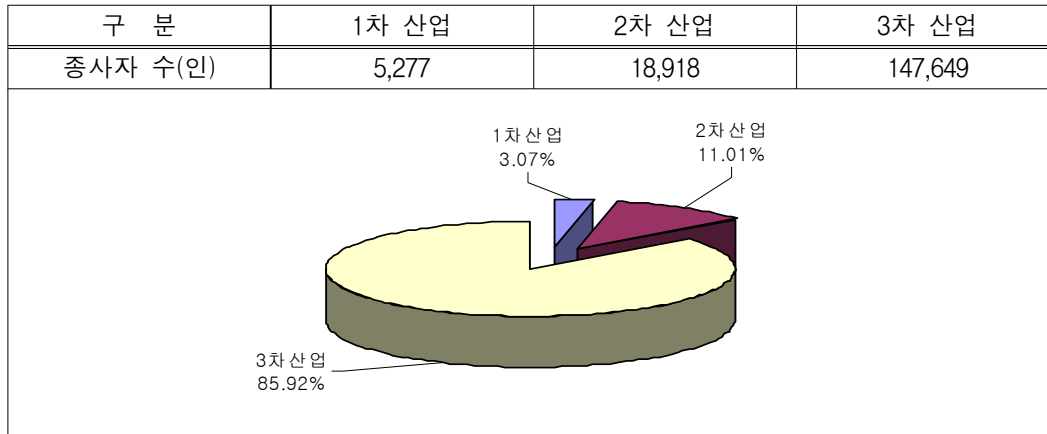
<그림 2.3> 산업별 총생산액의 추이(단위 : 백만원, 2000년 기준가격)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각연도

주 : 관광관련산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중심의 3차 산업이 8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 산업과 1차 산업이 각각 11.01%, 3.07%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귀포시에 비하여 제주시가 사업체수 및 종사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2> 제주특별자치도 산업 현황



□ 2차 산업

제조업 관련 사업체의 경우에는 제주시에 전체의 3/4이 집중되어 있고, 제주시에 1,425개소(73.5%)의 사업체가 입지하며, 6,199인(75.2%)이 종사하고 있다. 농림어업 관련 사업체의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277개소(57.2%)의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4,483인(76.0%)의 종사자가 취업하고 있다.

<표 2.23> 2차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소, 인, %)

구 분	2차산업 사업체수			2차산업 종사자수		
	농림어업	제조	소계	농림어업	제조	소계
제 주 도	479	1,939	2,418	5,899	8,245	14,144
제 주 시	202	1,425	1,627	1,416	6,199	7,615
서귀포시	277	514	791	4,483	2,046	6,529

자료 : 제주도, 2005년 제주통계연보

□ 제조업의 위상

2003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은 6조 7,855억원이며, 그 중 제조업은 2.5%를 차지하여,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1/4이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기준 26.3%로,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시·도 중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24> 제주도 제조업 현황

구분	2003	단위	전국	제주도	
				현황	전국대비
2003년 현황	사업체수	개소	112,662	344	0.31%
	부지	천㎡	529,198	1,533	0.29%
	종사자수	인	2,735,493	4,713	0.17%
	생산액	억원	6,773,713	6,997	0.10%
	부가가치액	억원	2,558,129	2,948	0.12%
연평균 증가율 (98~03)	사업체수	%	7.2	6.8	0.94
	부지	%	2.3	-4.5	-1.99
	종사자수	%	3.3	4.5	1.34
	생산액	%	9.8	10.6	1.09
	부가가치액	%	7.7	6.3	0.81

자료 : 통계청 「산업 총조사 보고서」 원시자료, 각년도

□ 업종별 구조 및 특화도 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제조업과 비금속광물 제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지키고 있다. 이들 2개 업종이 제주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50%를, 그 외 지표로는 70%를 상회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 특정 업종 집중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음·식료품 제조업은 1인당 출하액과 부가가치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지는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2.25> 제주도 제조업의 전국대비 업종별 특화도

구 분	사업체	종사자	출하액	부가가치	부지면적
제조업계	1.00	1.00	1.00	1.00	1.00
음·식료품 제조업	4.58	6.00	7.81	8.04	4.74
섬유제품 제조업	0.14	0.12	0.05	0.04	0.1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42	1.32	1.00	1.18	0.8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78	1.45	1.75	1.17	1.01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1.16	3.22	2.71	2.74	1.23
화합물 및 화학제품	0.95	0.55	0.36	0.41	0.5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97	0.97	0.76	0.68	1.5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08	5.02	7.42	4.98	3.5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0.74	0.71	0.89	0.90	0.5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0.35	0.27	0.20	0.21	0.11
기타 전기기계	0.98	0.42	0.32	0.38	0.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7	0.22	0.06	0.09	0.13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92	0.78	0.58	0.77	0.38
기타	0.09	0.06	0.03	0.03	0.03

자료 : 통계청, 2003년도 기준 산업총조사 결과

□ 제조업 클러스터 분석

제주도의 제조업은 음·식료품산업군과 건설산업군 및 금속·기계산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사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전자의 2개 산업군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80%가 이들 두 개 산업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종사자의 54%가 음·식료품 산업군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제품의 용도 표기가 불명확하여 금속·기계 산업군이나 기타로 분류한 소형선박 수리업, PE 필름제조업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제주도내 제조업 종사자의 최소한 60%는 음·식료품 산업군에 직접 종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26> 제주도 제조업 클러스터 현황

(단위 : 인)

업종 \ 산업군	식품산업군	건설산업군	금속기계군	기타제조업	합계
음식료품	2,379	-	-	-	2,379
종이	120	-	-	50	170
목재	5	36	-	39	80
화학제품	218	-	-	61	279
고무	41	106	19	114	280
비금속 광물	12	1,113	0	130	1,255
금속	23	122	61	17	223
기계	66	-	275	14	355
기타 운송장비	-	-	63	-	63
기타	9	5	37	222	273
제조업 계	2,892	1,382	455	647	5,357

주 : 자료 출처 및 집계방식의 차이로 통계청 자료에 의한 표와는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산업자원부 FEMIS 원자료

□ 건강·뷰티 생물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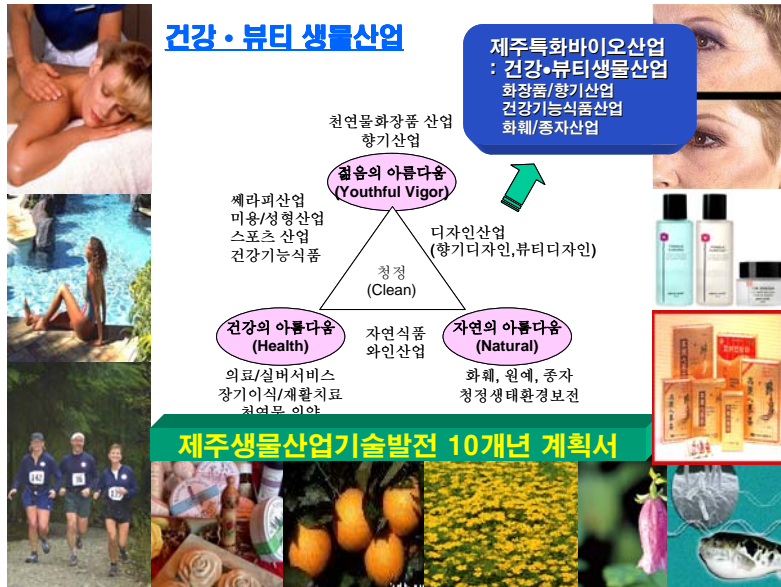
제주지역 생물산업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특화바이오산업인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에 따라 향장품 및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 생물산업 관련 사업체는 광의적 개념으로 1,100여개 있으나, 바이오기술 기반을 토대로 하는 사업체는 230여개⁴⁾가 있다.

2005년 현재 1차 산업 기반의 제조업을 포함한 생물산업의 매출규모는 약 7,750억원 수준이며, 약 2,200여명이 도내 생물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도내 생물산업체는 청정 농수축산물을 가공 생산하는 식품·음식물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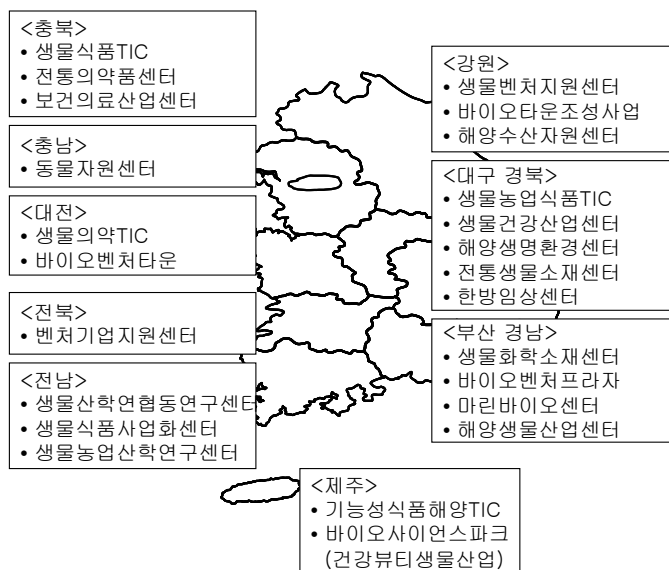
최근, 생물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정부의 R&D사업 참여 기업체 수, 특허출원 수 등의 증가로 제주 생물산업 혁신역량이 급성장하고 있다. 제주지역 생물산업체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부족이며, 영업자금, 기술개발자금, 해외 판로개척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생물산업 관련 벤처기업 20개 포함, 2005년

제주 특화 건강·뷰티 생물산업은 '젊고(Young), 건강하고(Healthy), 자연
적인(Natural)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나타나는 국민소득 2만불 시점
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 산업으로 건강기능성식품, 천
연물 기반 향장품, 종자·원예 산업 등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그림 2.4> 제주특화 건강·뷰티생물산업의 개념도



<그림 2.5> 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 디지털콘텐츠산업

제주지역의 정보통신산업은 텔레메틱스시범사업(04-05) TestBed 등 신기술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상의 4대 핵심산업(관광, 1차산업, 의료, 교육)과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IT/BT/ET) 육성전략의 마련으로 획기적인 계기를 맞고 있다.

기술혁신사업(RIS)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디지털아일랜드”사업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대학교, 지역업체 등 14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지역포털, 신기술기반기술개발(RFID)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도내 각 대학에서 IT·CT(Information Technology/Culture Technology) 관련 인력을 연간 약 1,550명 정도를 배출하고 있으나, IT·CT 산업관련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문화환경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 타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ITRC, DCRC를 통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에서의 취업·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7> 지역별 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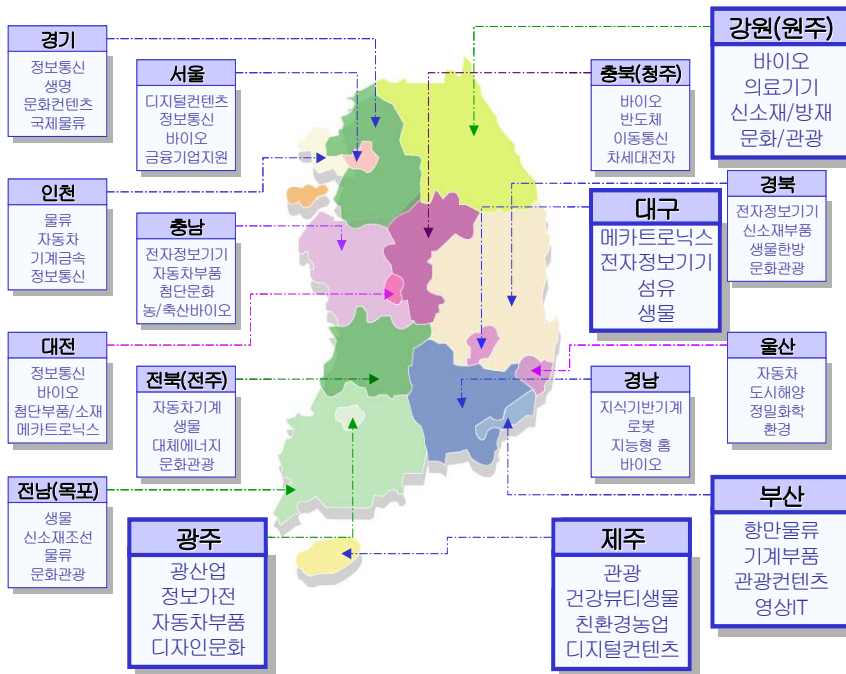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억원, 개, 억원, 명)

지 역	인구(GRDP)	제조업	IT기업	벤처기업	연구기관	산업단지 현황			
						단지	기업	생산액	종사자
부 산	3,699(426,160)	28,113	778	364	297	7	2,096	80,810	47,248
대 구	2,540(243,365)	23,623	561	230	192	8	2,344	99,570	74,797
광 주	1,407(157,229)	7,200	320	338	239	8	1,508	107,504	39,197
대 전	1,451(171,339)	6,488	496	425	43	6	748	48,355	35,212
울 산	1,081(346,725)	4,841	146	52	97	7	876	815,376	100,496
강 원	1,530(204,400)	6,526	198	338	239	34	1,055	30,960	16,761
충 북	1,501(228,452)	8,369	449	207	305	62	787	168,833	44,060
충 남	1,973(379,598)	11,250	358	228	17	103	1,800	160,469	57,377
전 북	1,916(222,860)	9,364	232	119	103	52	1,166	144,193	45,838
전 남	1,994(348,390)	10,208	127	135	46	46	1,290	448,195	50,100
경 북	2,722(492,912)	17,640	787	298	36	82	2,193	736,575	139,778
경 남	3,144(486,414)	22,736	629	321	46	70	2,914	561,872	149,168
제 주	557(67,384)	1,889	97	35	39	4	47	878	525
합 계	25,515 (3,775,228)	158,247	5,178 (1.8%)	3,090	1,699	489	18,824	3,403,590	800,557

자료 : 정보통신부(05.6), 내부자료 수정

□ 전략산업 현황(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등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확보를 위하여 텔레매틱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제주지역내 230개의 IT관련 기업 중 39개사가 디지털콘텐츠제작업체('03년 기준 매출액 148억원, 수출 16억원), IT협동연구센터 등 3개 지원센터가 있다. 제주권에서는 텔레매틱스 시범사업 이후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차세대 모바일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활용을 요청하고 있다.



<그림 2.6> 지역별 전략산업 현황

3. 핵심산업 발전방안

3.1 관광산업⁵⁾

1) 외국 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⁶⁾ 운수권 확대 허용

외국항공사가 제주도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을 요청할 경우 항공회담을 통하여 추가확대 추진하고, 현행 3개국(일본, 중국, 대만) 9개 노선에서 동남아, 미주, 유럽 등 국제직항노선 다변화에 기여하며 외국 항공사가 5자유를 활용하여 국제직항노선(외국도시~인천~김포~제주 ⇒ 외국도시) 제주확대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토록 한다.

2)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 등 관광제도 개선

도 전역 면세화와 관련, 가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쇼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고, 제2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내국인면세점의 경우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는 현행 4회에서 관광객의 경우 대개 최대 2달에 한 번꼴로 제주를 방문한다고 할 경우를 가정하여 6회로 확대하고, 주류 판매제한을 완화(12만원 → 40만원)하여 쇼핑관광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도 전역 면세화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2단계 제도개선시,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제주도 관광객이 구매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면세한도를 1인당 1일 10만원, 1회(6일 체류시) 60만원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미반영되고, 이에 대해서는 3단계 등 후속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와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5) 국제자유도시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안을 토대로 정리함

6) 외국항공사가 경유지(예, 제주공항)를 거쳐 제3국으로 갈 경우, 경유국에서 여객을 유상으로 탑승시킬 수 있는 권리

3.2 교육산업

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성 확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서 규정 하도록 위임한다.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된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절차를 제주국제자유도시 교육환경 조성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과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서비스 질 제고로 외국인 투자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권 확보하여야 한다.

□ 제주영어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현재 허용되는 국제고등학교 이외에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도 허용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주영어전용타운과 연계하여 국제중학교만 아니라 국제초등학교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국제화 교육환경 여건 조성과 자율과 책무성,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 및 외국유학희망 내국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단계부터 국제이해 교육과정, IB(국제공통 입학자격), AP(대학과목 선이수제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제적 전문인을 집중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제주영어전용타운의 투자규모는 1조 6천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므로, 제주영어타운내 우수 교육기관 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이고, 학교설립인가, 사립학교 변경 및 폐지 인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조례로 정

함), 폐교재산의 대부 등의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조례로 정함), 대학의 명칭사용, 전문대학 전공심화 운영기준 규제를 완화한다.

협력관계 구축하여 교육 지자체 지원 확대(도-교육청, 도-대학간 협의회 운영), 원어민교원, 외국유학생 유치 지원, 외국교육과정 설치 지원한다.

3.3 의료산업

1)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근거 마련하고, 외국 영리병원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특화된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장비도입의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시설기준은 병상규모가 200병상 이상 등 이어야 하며,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현행 특별법상 외국인전용약국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외국 영리병원을 국내의사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의료기관의 축적된 의료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등과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한다.

2) 제주형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의료요양 비자(Medical Visa)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4년)한다. 외국 영리병원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간호사를 추가하고, 외국 영리병원의 부대사업범위 대폭 확대한다.

외국 영리병원 뿐만 아니라 도내 의료기관에 대해 외국거주 내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환자)에 대해서도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 허용한다.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병원경영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

3.4 첨단산업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권한 이양한다. 도내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조정권 이양,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통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특례 권한 이양과 첨단산업의 활성화 및 인재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3.5 청정1차산업

중앙권한 이양을 통해 제주지역에 맞는 농지, 초지, 산림, 공유수면 관리 시스템 구축하여 1차산업 구조 고도화한다. DDA 등 시장 개방을 청정 1차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고, 품질인증 및 원산지표시제 의무와 지도·감독권한을 이양, 청정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한다. 1차산업의 쾌적성 자원(어메니티)을 활용하고, 1차산업과 관광산업 및 첨단산업 간 연계체제 강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외국의 고품질 농수산물 수요 증가를 대비한 품질인증의 강화와 수출기반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정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영농규모화, 시설현대화, 친환경 육성, 우수품종 개발, 인력양성 등 추진하며, 생산·유통 이력시스템, 식품 안정성검사, 콜드체인을 구축한다.

농지·초지·산지의 전용과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한을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양한다.

품질인증과 관련된 권한(유효기간, 인증기관 지정, 지도감독권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도지사로 이양한다.

4. 관련계획 및 제도 검토

4.1 관련계획 검토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 계획의 성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기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계획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보완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새롭게 제시된 핵심산업 부문을 보충하고, 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미반영된 사항을 보강한 보충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다.

□ 계획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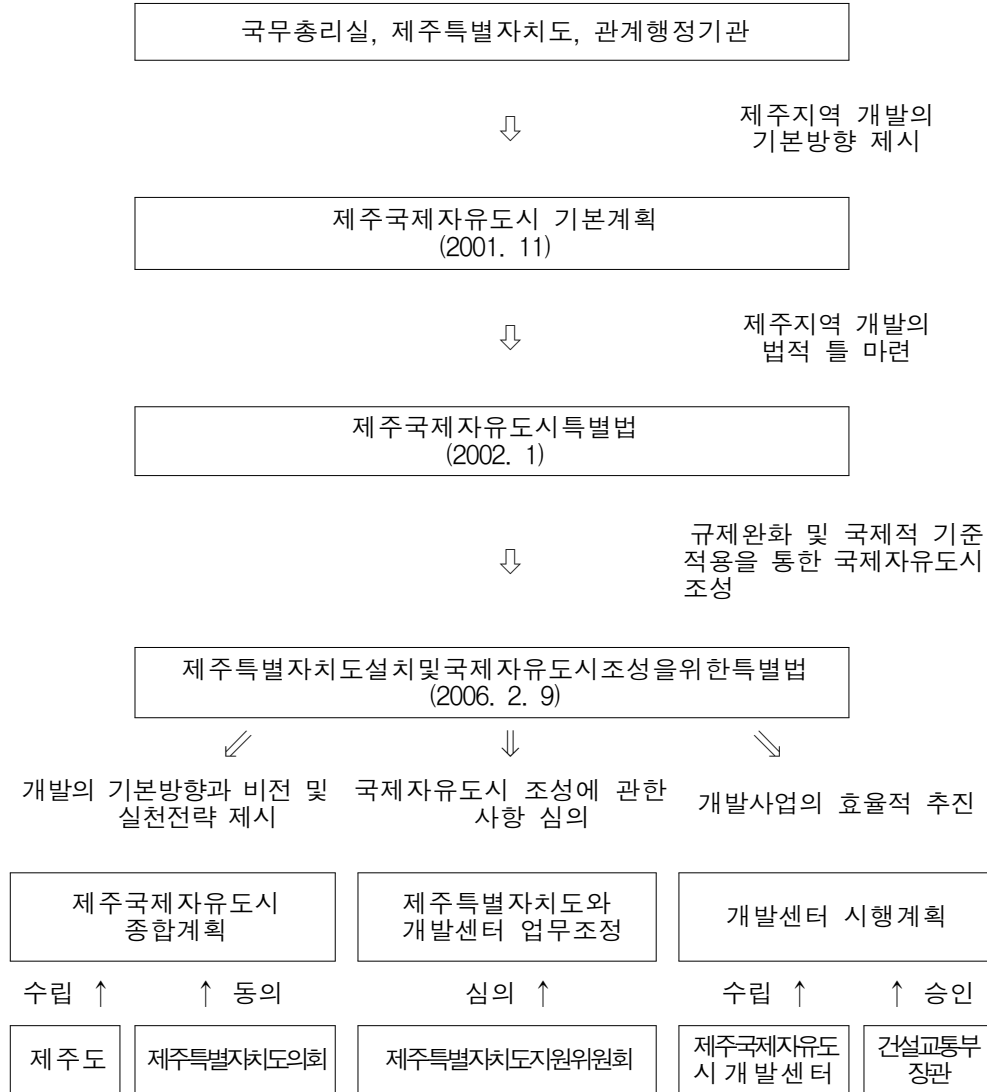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공한다.

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핵심 논리를 보완하고, 핵심산업 육성책 마련, 선도·후속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 전략사업 발굴, 지역균형발전전략 수립, 국제자유도시 추진체계 재검토를 통해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계획의 범위

보완계획 수립 시점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6개년 간으로 계획기간을 설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총 1,846.28km²) 및 접속해역을 계획대상구역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제시된 4+1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루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현황 및 여건분석,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 4+1 핵심산업육성전략, 투자유치전략, 경쟁지역과 차별화 전략사업 발굴·육성, 지역균형발전 시책, 계획의 집행과 관리 등을 내용적 범위로 하였다.



<그림 4.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체계

2) 2025광역도시기본계획

□ 계획의 법적 근거 및 지위

제주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43조 제4항에 근거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며, 국토계획법 제1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제주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종합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본 계획의 상위계획이며, 본 계획은 이들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다만, 이들 상위계획은 도시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주로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광역적인 개발방향과 사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본 계획과는 차별화 된다.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 전체를 단일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 필요하여 생활권, 경제권, 행정권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발전방향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광역계획권을 구성하는 제주도 전체를 단일 계획으로 운용토록 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제공한다.

□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 친환경·고품격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 u-Jeju !

- 인재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도시
- 활기차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 첨단도시
- 독특한 문화와 자연환경, 테마형 관광도시
-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
-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 국제도시

-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조성
- 지식정보 교류기반의 구축

▷ 첨단도시

- 지능형 정보화 도시 건설
-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운영

▷ 관광도시

- 자연·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
- 테마형 관광활동의 적극 도입

▷ 생태도시

- 단절 및 훼손된 녹지체계의 기능회복
- 생태녹지회랑 및 생태 핵심지역 설정, 생태통로 확보 등 생태네트워크 구축

▷ 안전도시

- 재해에 강한 도시구조 구축
- 종합적인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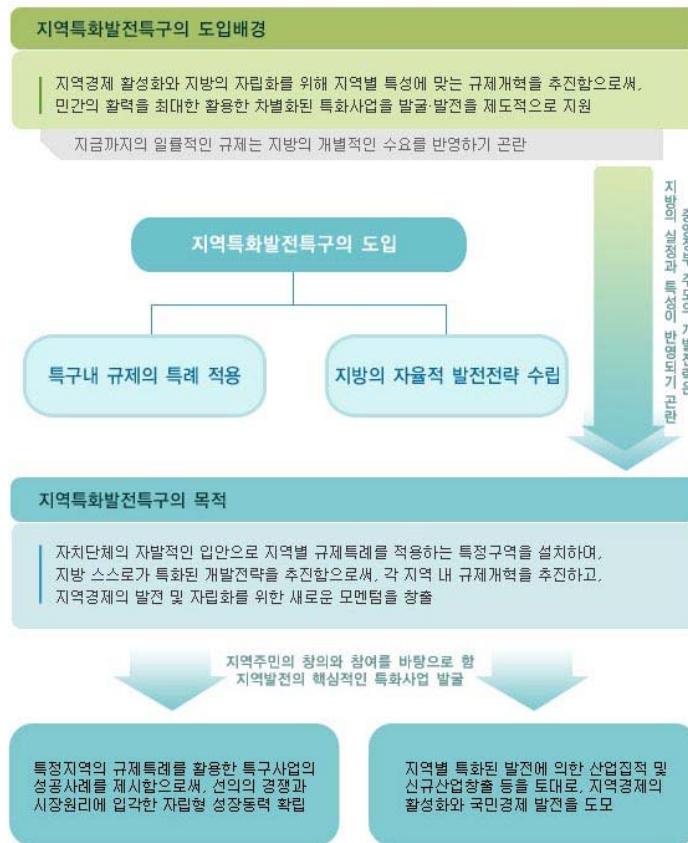
<그림 4.2> 계획의 목표와 추진 전략

4.2 관련제도 검토

1)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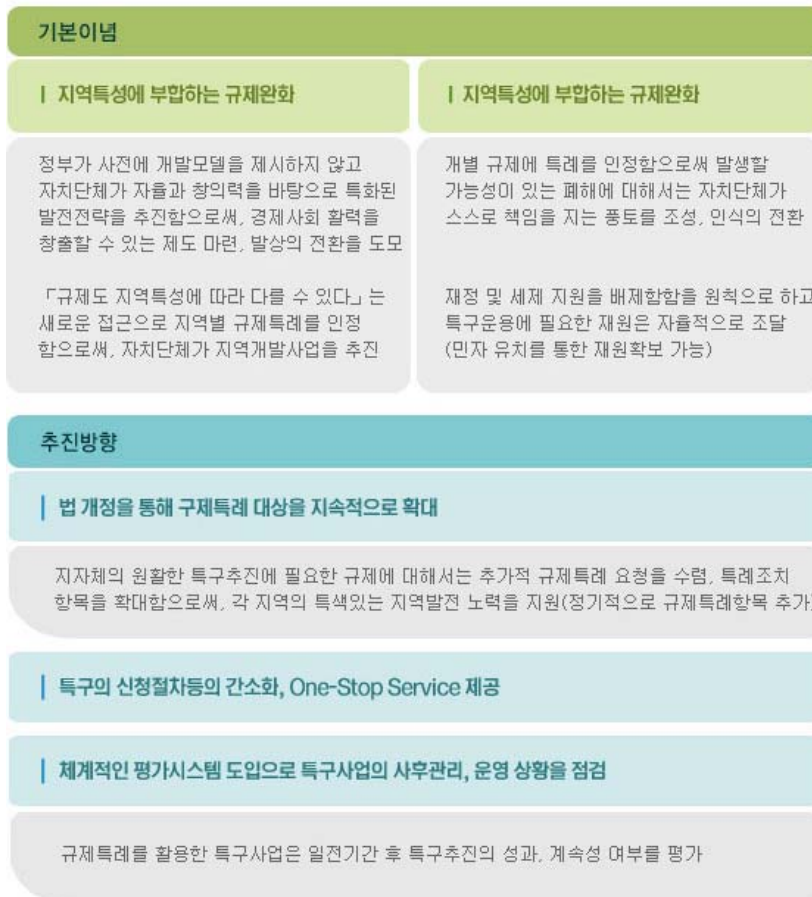
지역특구제도는 일종의 윈윈전략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을 줄이면서 규제개혁의 구체적 사례 수집을 통해 그 성과 및 문제를 평가하여 전국에 확산시킴으로서 제도의 혁신과 함께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 제한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었던 지역개발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지역발전 모델과 안정된 재정확립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4.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 및 목적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이러한 지역발전특구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지역개발정책과 구분된다. 첫째, 기존 지역개발 정책은 주로 낙후지역을 중앙정부가 설정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획일화된 개발을 꾀하는데 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낙후지역들이 개별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개성 있는 지역 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4.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기본이념과 추진방향

둘째, 정책수단의 차별성으로 기존 지역개발정책은 대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 금융상의 지원수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지

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그러한 인센티브 없이 지역발전제도로 지정되었을 경우 유일한 지원수단으로 해당 지역이 제안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셋째, 정책추진체계상의 차별성으로 기존 지역개발정책은 대개 국토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건교부(부분적으로 행자부)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지역발전특구제도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재경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계획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보다 중요시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4.1> 우리나라 주요 지역활성화 정책의 개요

구분	정책명	지역단위	주관부서	근거법	최초지정	예산
글로벌 특구 조성	제주국제자유도시	도	건교부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법	2002	'02~'11년까지 29.5조원
	경제자유구역	임의지역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	2003	'03~'20년까지 30.5조원(3곳)
	대덕연구개발특구	임의지역	과기부	대덕연구개발특구법	2005	계획미수립
지역산업진흥	지역산업진흥사업	광역시도	산자부	-	1999	5.7조원(4개 지역 1~2단계 및 9개 지역 단계)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시	문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001	'00~'10년까지 6천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임의지역	중기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1	'01~'04년까지 2,400억원
	지역소프트타운	시	정통부	-	2002	초기 25억원+매년 2.5억원(1개 지역당)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산자부	-	2004	'05년 300억원
	기업도시	임의지역	건교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민간개발
	혁신도시	임의지정	건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2012이전 완료예정
낙후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	임의지역	건교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1996	1차~5차 16.2조원
	소도읍 육성	읍	행자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2003	'03~'12년까지 12조원
	신활력지역	시군	행자부	-	2004	매년 2천억원
농어촌지원	정보화마을	마을	행자부	-	2001	1차~3차 677억원
	농어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 농촌진흥테마, 어촌체험마을)	마을	농림부 농진청 해수부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촌진흥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2002	2,019억원(3개 정책)
	지역특화발전특구	시군구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2004	국비투입 없음

자료 : 삼성경제연구원, 2005

<표 4.2>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와의 비교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근거법률 (제정시기)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 특례법('04. 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02. 12)	관광진흥법('86. 12)
주요목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비즈니스·물류 중심지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규제완화방식		지자체가 특구내 적용될 규제 특례를 선택	경제자유구역내 일률적 규제완화	관광특구내 일률적 규제완화
주요 규제 특례	의료법	외국법인 병원설립 불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실버특구)		없음
	교육법	외국법인 학교설립 불가 특성화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내 외국인교원 채용 허용	외국법인(비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외국인전용 병원·약국허용	없음
	기 타	토지관련 26개 인허가 일괄 처리 자동차관리법 등 23개 개별 법률 규제완화	외국법인(비영리법인)학교 설립 허용 국제고등학교(특수목적고) 내 외국인 교원 채용 허용	야간영업시간 제한 적용배제(야간영업 시간 제한제도가 폐지('99)되어 실효 성 없어짐)
재정· 세제지원		없음	외투금액 1천만불이상 제 조·관광·물류업체에 3년 간 100%, 2년간 50% 법인 세 등 세제감면	없음
지정요건		사업재원 확보, 투자유치 가 능성, 지역특성과의 적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특구위원회에서 심의	기반시설(국제공항·국제항 만)확보, 외국인투자유치 가 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지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8개 지역이 해당	최근 1년간 외국관광 객이 10만명 이 상이고, 숙박·관 광시설 확보
지정현황		'04년 말까지 1차 지정 예정 예비신청('03. 9) 448개	인천송도, 부산항, 광양항	이태원 등 13개 시·도 22개 특구
수도권 선정여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지정권자		재경부 장관	재경부 장관	문광부 장관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

현재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제주의 1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87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향토자원진흥이 41개로 가장 많고, 관광레포츠 17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완화가 용이하지만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의료와 교육부분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별('07년 8월말 현재)

순번	교육	산업&연구	의료	관광레포츠	향토자원 진흥	유통/물류
소계	10	7	3	17	41	9
1	순천 국제화 교육특구	원주첨단 의료건강 산업특구	익산 한양방 의료·연구단 지특구(변경)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 자연환경보호 특구	순창 장류 산업특구	대구(중구청) 약령시 한방 특구
2	창녕 외국어 교육특구	강릉 사이언스 파크특구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여수 오션리 조트특구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금산 인삼헬스 케어특구
3

제주특별자치도 도내의 특구로는 마라도 전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08~756번지)을 대상으로 한 299,346㎡(90,710평)의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 특구'가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국토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관광객이 연 2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향후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없을 경우 교통 체증과 관광객의 보행안전상 위험은 물론 천연보호구역의 청정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는 자구책으로 주민결의를 통해 18대의 주민소유 차량 중 마을 공용차량 2대를 제외하고 방출하는 등 자율관리하고 있으나 특구로 지정하여 자동차 운행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특구지정을 통해 자동차운행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행제한의 실효성 확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마라도의 청정이미지 유지 및 관광자원 보호효과를 도모하였다.

마라도에 적용된 특구는 특정시설이나 구역에 한정된 경우로 하향식 개발이 아닌 상향식 개발로 진행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 및 의료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투자진흥지구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4>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 특구의 내용

구분	관련근거(협의기관)	규제특례 적용사항
권한이양 특례	특구법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 (건교부 자동차관리과) (경찰청 교통기획과)	○ 특례적용 필요성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 제한을 특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 관할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토록 하는 권한이양 특례규정 적용 ○ 특례적용 내용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귀포시장이 군수가 마라도내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2) 투자진흥지구

□ 제주 투자진흥지구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고 시행령 제36조에 관광·수상관광·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사시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삭도및케도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및 교육원(연수원), 외국의료기관, 첨단산업,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에 투자금액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해 투자인센티브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이며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내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과 「제주투자진흥지구의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투자자나 사업시행 공공기관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하여 일정자본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⁷⁾.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투자자본에 대하여도 차별없이 지원된다.

7) 김동욱,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 세미나, 200711.9

일반적으로 취득세·등록세는 지구 지정 전 전액감면, 개발부담금, 관세는 면제하고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는 10년간 면제,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부담금 50% 감면, 공유수면점·사용료 면제, 국·공유지는 50년간 임대 및 갱신 가능하며 임대료는 75/100범위내 감면 혜택을 준다.

2007년 7월3일 제2단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투자진흥지구사업 및 제주첨단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어 제주지역의 대기업 투자가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를 당초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나 이번 2단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 이양되어 절차 간소화는 물론 기관과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 투자진흥지구 절차

투자자는 제주특별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행정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한 후 투자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받아야 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을 특별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뒤,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과 관할 행정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시장은 의견을 제출시 투자시설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적합여부와 인·허가 여부 등을 포함토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행정시장에게 송부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토록 하고 행정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토록 한다. 지정고시사항은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기간 및 개발 또는 관리방법, 투자사업의 내역이나 투자사업 유치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반면에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고시할 경우는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투자자의 상호·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공공기관, 지정해제 사유를 명기하도록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현황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규제완화로 인하여 투자가로부터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2007년 6월 현재까지 지정실적은 4개 사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총 투자규모는 5,798억원이 투자되었고, 총 44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현재 6개 사업이 심사예정인 상태이다. <표 4.5>는 2007년 6월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진행중이며 주로 테마파크나 관람시설 위주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이외의 시설로써 선정된 경우는 없다.

<표 4.5> 2007년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대상 사업장

	투자진흥 지구지정	투자금액 (감면금액)	투자내용
동물테마파크	'05.7.13	560억원 (감면액 : 82억원)	생태동물원, 식물원, 가족생태 박물관, 승마장, 가족호텔 등
비치힐스리조트	'06.11.27	3,322억원 (감면액 : 208억원)	동물원(사파리농원), 연수원, 호텔, 콘도, 미술관, 공연장 등
해비치리조트	'07.6.15	1,749억원(감면예상 금액 : 118억원)	호텔(289실), 부대시설(연회장,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
나비·곤충·어류 박물관	'07.6.15	167억원(감면예상 금액 : 32억원)	전시장, 방사장, 미로형, 체험학습장, 야외공연장 등
성산포(섬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추진예정	-	
묘산봉관광개발	추진예정	-	
앵커호텔건립	추진예정	-	
제주롯데리조트	추진예정	-	
라운승마장	추진예정	-	
제주골든파크	추진예정	-	

□ 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투자지역 비교

외국인투자지역은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가도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은 2천만 달러 이상(관광업)을 투자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진흥지구는 투자 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며,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 역시 확대되었다.

<표 4.6>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 투자지역의 비교

구 분	제주투자진흥지구	외국인투자지역
근거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상투자	내·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지정절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재경부장관)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업종 총사업비 5백만불(US\$) 이상 투자시 ○기타사업 총사업비 5백만불(US\$) 이상 투자시 ○관광업, 문화산업, 대체에너지개발 교육, 의료, 생물, 정보통신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시설 : 총사업비 5백만불(US\$) 이상 투자시 ○물류업 : 총사업비 1천만불(US\$) 이상 투자시 ○관광업 : 총사업비 2천만불(US\$) 이상 투자시 ○제조업, 고도기술산업 : 총사업비 3천만불(US\$)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재산세 : 10년간 100% 감면 ○등록세, 취득세 및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면제 ○국공유지 임대 : 50년 이내(갱신 가능), 임대료 75%범위 내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재산세 : 15년간 100% ○등록세, 취득세 면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국공유지 임대 : 50년 이내(갱신 가능), 임대료 최고 100%범위 내 감면

*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경제특구

□ 경제특구의 투자지원

경제특구의 개념이나 정의는 그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말하며,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내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정한 경제활동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지역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자유지역(Free Zone),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수출자유지역(Export Free Zone) 등 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 및 발전된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하여 조세지원혜택이 부여되는 특정지구 또는 단지 이외에 현행법상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지역중 도입년도 순으로 살펴보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의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구역 등이 있다. 이 중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자유무역지역 및 지역특화발전구역의 투자지원세제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송도, 영종, 청라)이 2003년 8월 6일 국내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추가되어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7년 하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추가지정 예정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총 10곳(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인천항, 광양항, 부산항, 인천국제공항)을 지정 운영 중이나 내년에 하반기에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상대로 확대를 추진하고, 이러한 세제 특혜 경제지역은 계획 확대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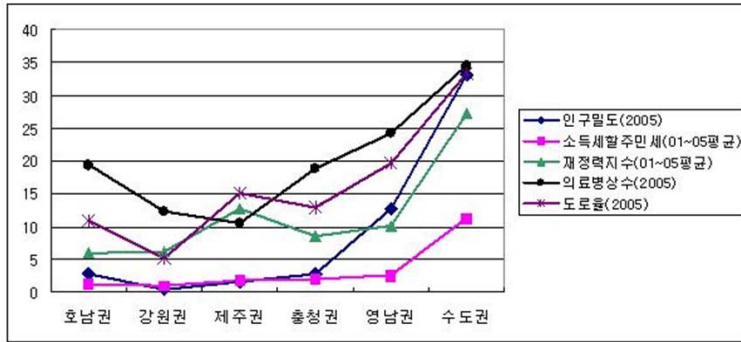
<표 4.7> 타 경제특구의 투자지원세제

구 분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경제자유 구역법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 3년 100%, 2년 50%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 관세 : 3년간 10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 3년 100%, 2년 50%
기업 도시법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50%, 2년간 25%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 3년 100%, 2년 50%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 개발구역 입주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 3년 100%, 2년 50%
자유무역 지역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50%, 2년간 50% - 지방세 : 15년간 100% 내지 50%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무관세	좌동
지역특화 발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11조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	좌동

4)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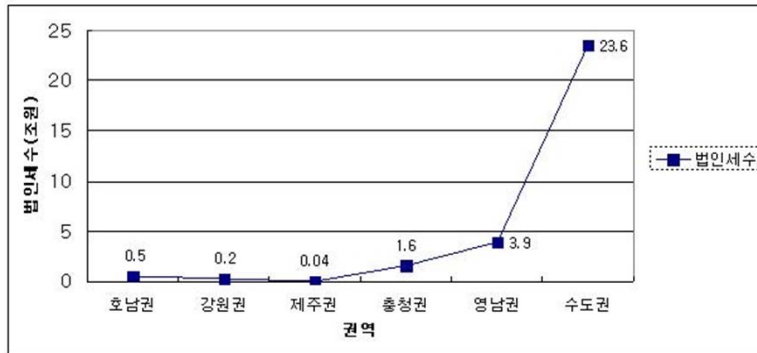
참여정부는 2007년 7월 25일에 균형발전 의지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178개) 이전 및 10개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6개) 건설 등 공공부문 중심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전국을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분류, 차등지원기준으로 활용하고, 인구·경제력 등 5대 부문 14개 지표의 통계치를 종합평가하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 내용은 2대부문(기업대책·사람대책)과 14개 과제로 분류한다⁸⁾.

8)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자료집에 제시된 내용임



<그림 4.5> 권역별 주요 분석지표 비교

법인 본사의 수도권 집중으로 법인세 규모도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수('06년)의 수도권 비중은 79%에 달하며, 제주권은 0.1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4.6> 권역별 법인세수 규모 비교

법인세 감면을 위해 정부는 먼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지역1', '지역2', '지역3', '지역4' 등 4개 그룹으로 분류, 법인에 차등지원 기준으로 삼았다. 전국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그룹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한세를 적용 배제한다. 중소기업은 이전·창업·기존기업 모두 제한없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감면하고 대기업은 이전기업은 15년(10년 : 중소기업 수준, 이후 5년 : 중소기업의 1/2수준 감면), 창업기업은 10년(7년 : 중소기업 수준,

이후 3년 : 중소기업의 1/2수준 감면)이다. 지역1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경북 영양군 등이 해당되고, 지역4는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등이 속한다.

<표 4.8>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 내용

부문	분 야	대 책
기업 대책	1. 세 부담 경감	1-1. 법인세 등 세 부담 경감
	2. 인력난 해소	1-2. 지방중소기업의 기술전문인력 확보 지원 1-3.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양성제도 확대 1-4.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 1-5.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신규지원
	3. 산업용지 공급확대	1-6.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1-7. 초장기·초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 1-8. 산업용지 공급특례제도 도입
	4. 경제자유구역·자유 무역지역 추가지정	1-9.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1-10.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5. 도시개발권	1-11. 지방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확대
	6. 출총제 예외인정	1-12.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
	7. 지방기업에 맞춤형 패키지 지원	1-13. 지방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1-14.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확대
사람 대책	1. 고품질 주택 공급	2-1.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 공공주택특별분양제도 도입 2-2.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지원 2-3. 지방이전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 2-4. 지방의 주택관련 세제부담 경감
	2. 지방 초중등교육 수월성 제고	2-5. 지역 초중학교를 지역복지거점학교로 육성 2-6. 지방 우수고교 육성 2-7. 방과후 학교의 교육품질 향상
	3. 경쟁력 있는 지방 대학 육성	2-8. 지방대학 장학금 지원 확대 2-9. 지방대학의 학생전용 임대주택 지원 2-10.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11.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간 전략적 제휴 2-12. 지역특화분야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
	4.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2-13. 지방국립대병원을 3차 전문·특화의료기관으로 육성 2-14. 지방의료원을 2차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육성 2-15. 지역보건소를 1차 지역의료건강센터로 발전·강화 2-16. 지역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2-17.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2-18.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5. 지역선도도시 정주 여건 확충	2-19. 혁신·기업도시내 교육·문화·보육·의료·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
	6. 사회개발 투자	2-20.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7.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확대	2-21. 균특회계 배분기준 개선 2-22. 매칭펀드사업의 지방분담비율 차등화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또는 창업하거나 기존 지방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거주기간 제한없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최대 70%(지역1)에서 최소 30%(지역3)까지 차등 감면한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지역1'로 이전할 경우에는 10년간 70%, 이후 5년 동안 법인세를 35% 감면해준다. 대기업이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최초 7년간은 70%, 이후 3년간은 35%의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가장 발전한 '지역 4'에서 창업 또는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전, 창업, 운영할 경우 직장의료보험료 중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이 경우 3백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8억원 정도의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표 4.9> 지역등급별 세제 혜택

구 분	현 행	개 선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 4년간 50% 감면 ○ 이전 : 5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운영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수도권 10~20%, 지방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률적으로 기간 제한없이 차등 감면 지역1 : 70% 지역2 : 50% 지역3 : 30% 지역4 : 0%
대 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시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시(수도권→지역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10년 : 70%·50%·30%감면 -이후 5년 : 35%·25%·15%감면 ○ 창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7년 : 70%·50%·30%감면 -이후 3년 : 35%·25%·15%감면

주 : 지역1은 가장 낙후지역, 지역4는 가장 발전한 지역임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 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연계 석·박사 연구요원의 군복무를 대체근무 전문연구요원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배정한다.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기업대책 중 제주지역 투자여건과 비교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 예외 적용,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등이다. 특히,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총제 예외 적용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원입법안)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제2단계 개정으로 한 단계 향상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차별적 혜택이 반감된 셈이다. 특히 지역분류가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도는 지역 2, 3으로 분류될 전망이어서 더욱 그렇다.9)

5) 산업개발진흥지구

□ 근거 및 성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및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그러나 법률 제37조 제3항의 조항에 의하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제도적으로 공공의 전략적 지원을 통하여 지정지역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와 참여의지를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산업 및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¹⁰⁾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취락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촉진지구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은 산업개발진흥지구, 시설용지지구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¹¹⁾.

9) 김동욱,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 세미나, 2007.11.9

10)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한 유형이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며, 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11)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3조(2003. 5. 14. 조례 제2392호)

□ 서울의 사례

서울은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2004.09.24)에 의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전략산업의 육성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정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는 의미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서울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현재 서울시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특정 지역이나 연구단지를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진흥지구로 지정한 곳에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디지털콘텐츠, 금융·보험 등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입주 업체에 세금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기본계획을 확정된 뒤 오는 12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2008년 4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및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기반시설도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자금과 입주자금을 빌려주는 방안, 이외에도 시는 입주 업체에 대해 기존에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주던 경영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업 지원센터와 전시장, 판매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용도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때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그 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건축행위완화가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¹²⁾.

□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전국의 산업개발진흥지구는 2006말 기준 총 3,849개, 941.3km²의 규모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으로 기준으로 할때 전체 개발진흥지구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광역시에는 지정사례가 없고, 현재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지정이 없다. 제주의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비교적 많이 지정되어 있다.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서울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는 대규모 도시지역에서 산업육성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라기보다는, 비도시지역에서 공업이나 산업기능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판단된다.

<표 4.10> 시·도별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2006말 기준)

시도명	개발진흥지구 전체		산업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합 계	3,849	941,304,959	673	83,790,931	509	434,848,427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	-	-	-	-	-
대구광역시	-	-	-	-	-	-
인천광역시	11	1,436,340	-	-	4	791,580
광주광역시	-	-	-	-	-	-
대전광역시	-	-	-	-	-	-
울산광역시	-	-	-	-	-	-
제주특별자치도	75	56,853,103	13	951,674	59	54,890,524
경기도	495	134,157,335	51	7,605,811	94	51,592,310
강원도	212	207,162,067	50	16,233,232	83	174,038,693
충청북도	523	68,407,743	186	15,198,422	44	23,940,737
충청남도	348	49,027,478	143	17,009,033	45	13,867,529
전라북도	147	28,521,868	27	3,793,617	22	11,054,908
전라남도	469	187,072,325	41	6,226,749	54	66,171,467
경상북도	810	131,942,020	90	9,112,834	73	30,673,192
경상남도	759	76,724,680	72	7,659,559	31	7,827,487

12) 법률 제51조 제3항에 의해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위치할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핵심산업 육성 방안

5.1 핵심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은 관광분야를 우선으로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하여 진행중에 있다.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절차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정계획)의 신청, 지정요건 검토, 지원심의회,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지구지정 및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 개발시행계획 승인 신청, 승인, 사업시행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관광분야는 현재와 같이 투자진흥지구의 시설을 관광진흥법에 의해 설치하여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한다. 가능한 관광사업으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이 있다.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첨단산업¹³⁾ 중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산업법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가능하다. 산업법 개정법에 따라 산업단지는 국가·일반·첨단·기타 구분된다.

교육·의료·청정1차 산업은 개별법 관계없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도모한다. 청정1차산업은 유기농·축산개발 등, 교육은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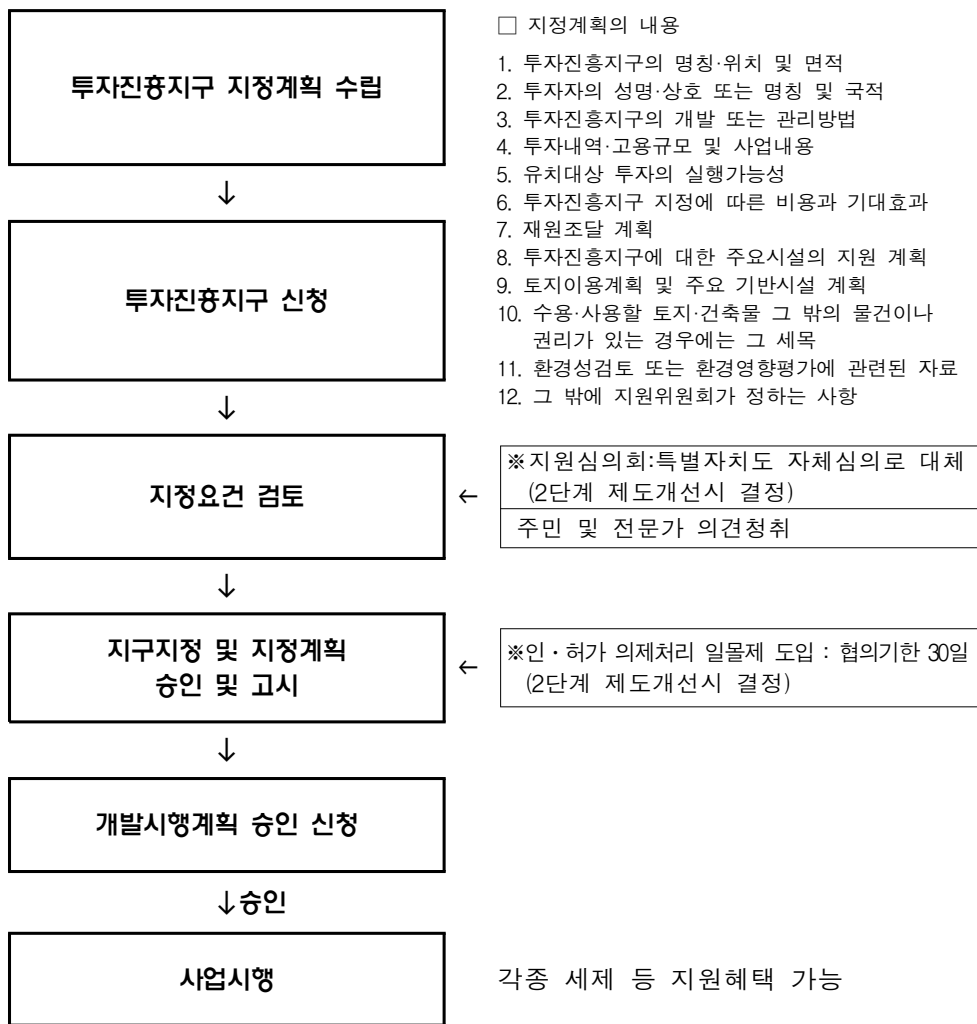
5.2 제도·세제 측면 지원 방안

핵심산업과 관련하여 투자진흥지구(특별법 제217조)는 개별법과 관련되어도(산업법, 관광진흥법 등) 무방하나 대부분의 시설이(령 제36조) 진흥지구

13)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법 제216조),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므로 지원위원회 심의 후 지정고시 받은 구역내에서 사업시행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법,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지원(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의 수립지침과 핵심산업별 지침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자는 지침에 근거하여 지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면 사업의 현실화가 빠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단계 제도개선에서 이루어낸 지원심의회 심의를 특별자치도 자체 심의로 이양받은 것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 5.1> 투자진흥지구 개발절차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준비중인 사전 투자진흥지구¹⁴⁾ 지정제도가 확대되면 투자가는 토지매입에서부터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사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지정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만 가능하다. 또한 개발대상 토지의 2/3이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가능해 개인투자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3단계 제도개선 반영된다면 핵심산업의 육성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14) 3단계 제도 개선사항으로 추진계획임

6. 결 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은 기존의 특별법과 제2단계 제도개선 등을 근거하여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하여 개발토록 한다. 핵심산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핵심산업육성지구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핵심산업별로 집적이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지정없이 교육이나 의료, 첨단산업 등의 핵심산업육성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핵심산업들이 입지하게 될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로써 관광분야에 실제 적용되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진흥지구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별법상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가능한 산업과 사업범위에 핵심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진흥지구의 활용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계획법상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되듯이 종합계획 및 투자진흥지구의 수립 지침과 유형별 기준 마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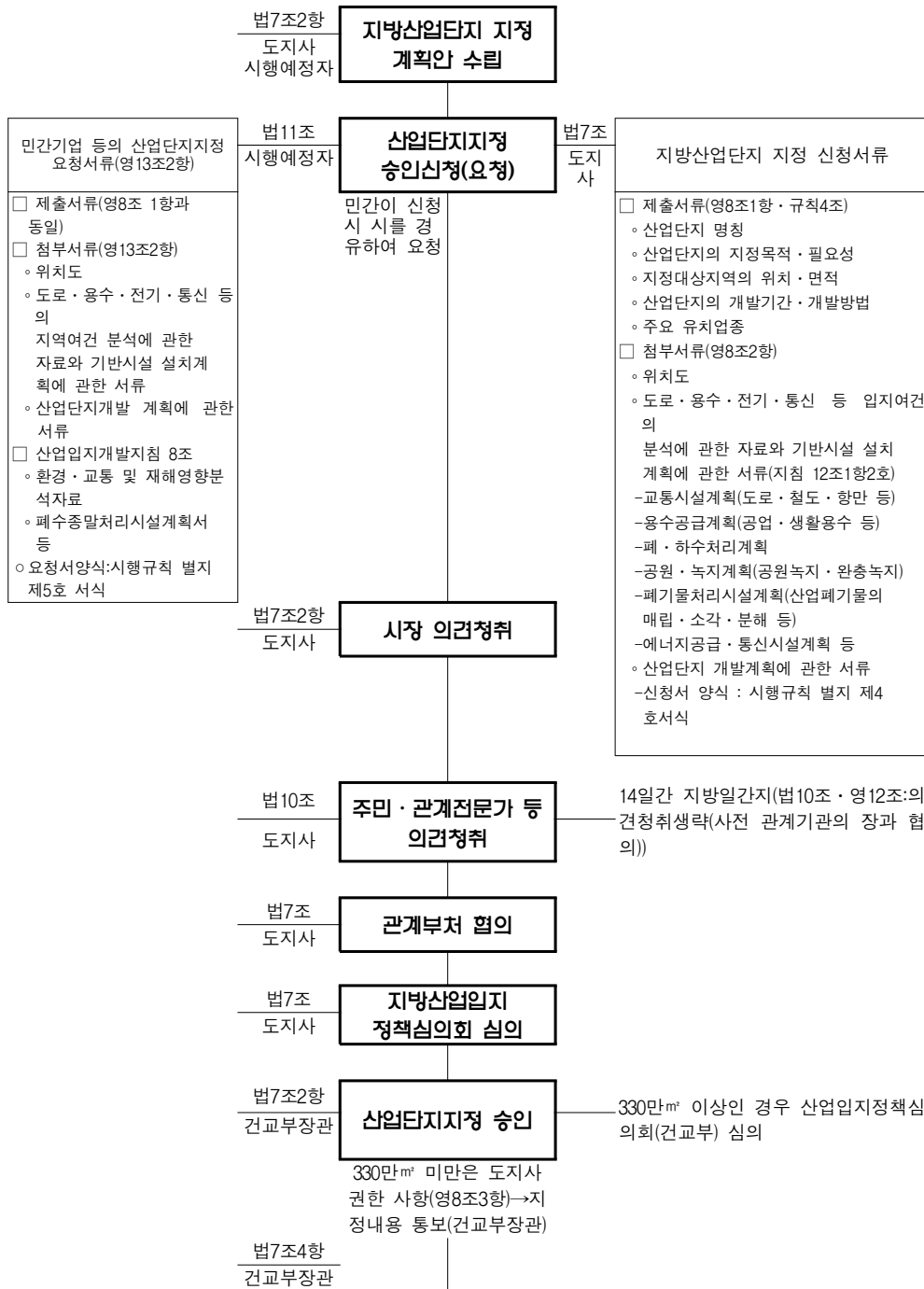
또한, 투자진흥지구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입지하게 될 때 이들 지구간의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교통편의성도 부가적으로 확보해주어야 하며, 이것은 특정시설에만 국한된 구상이나 계획만으로는 미흡함으로 도내 전역의 관련 시설이나 교통망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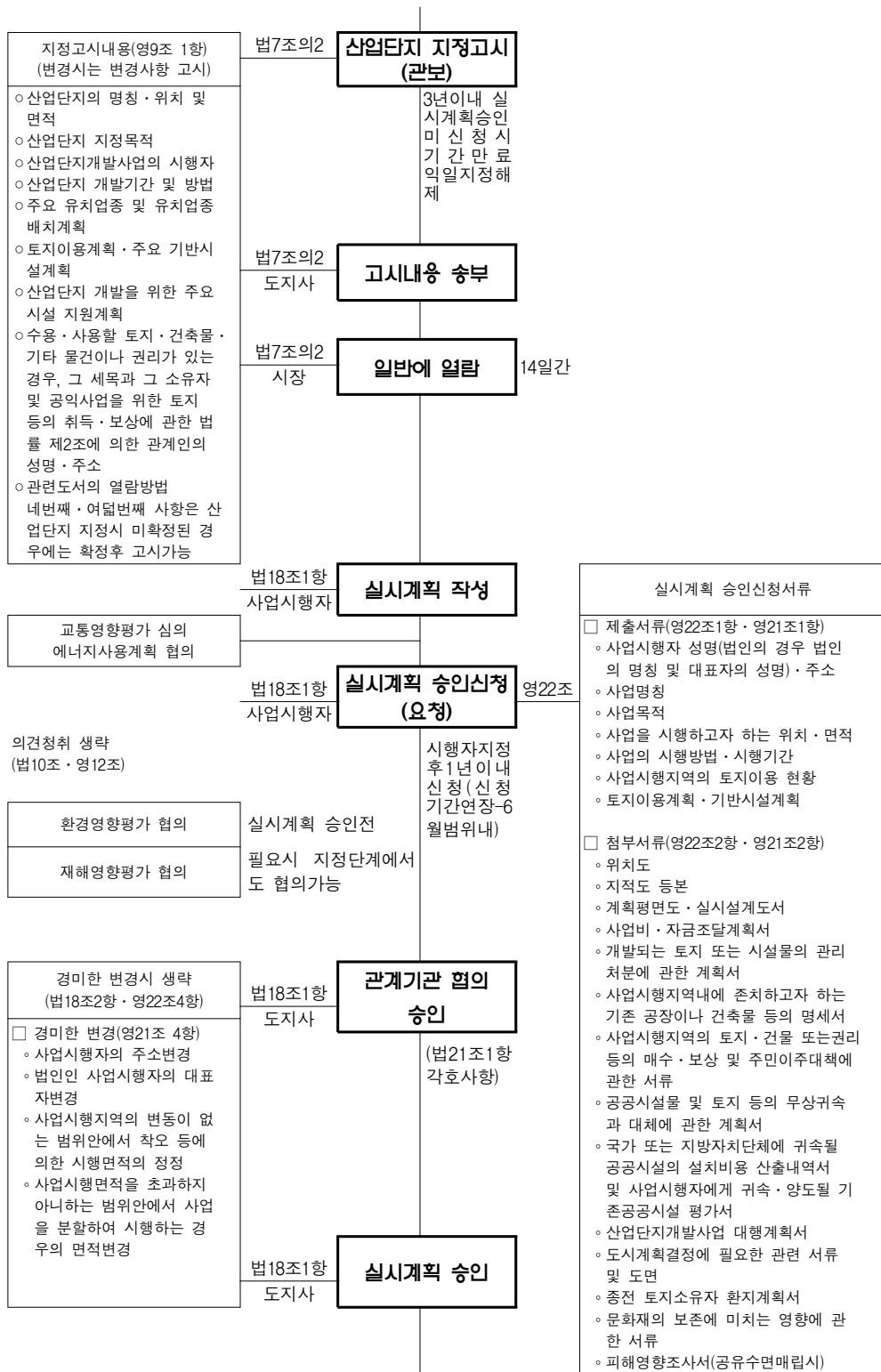
그러나 지원심의회가 국무회의에서 특별자치도 자체심의로 대체됨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용이해졌지만, 난개발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의 입지를 규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미래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투자진흥지구를 유치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몸 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숙제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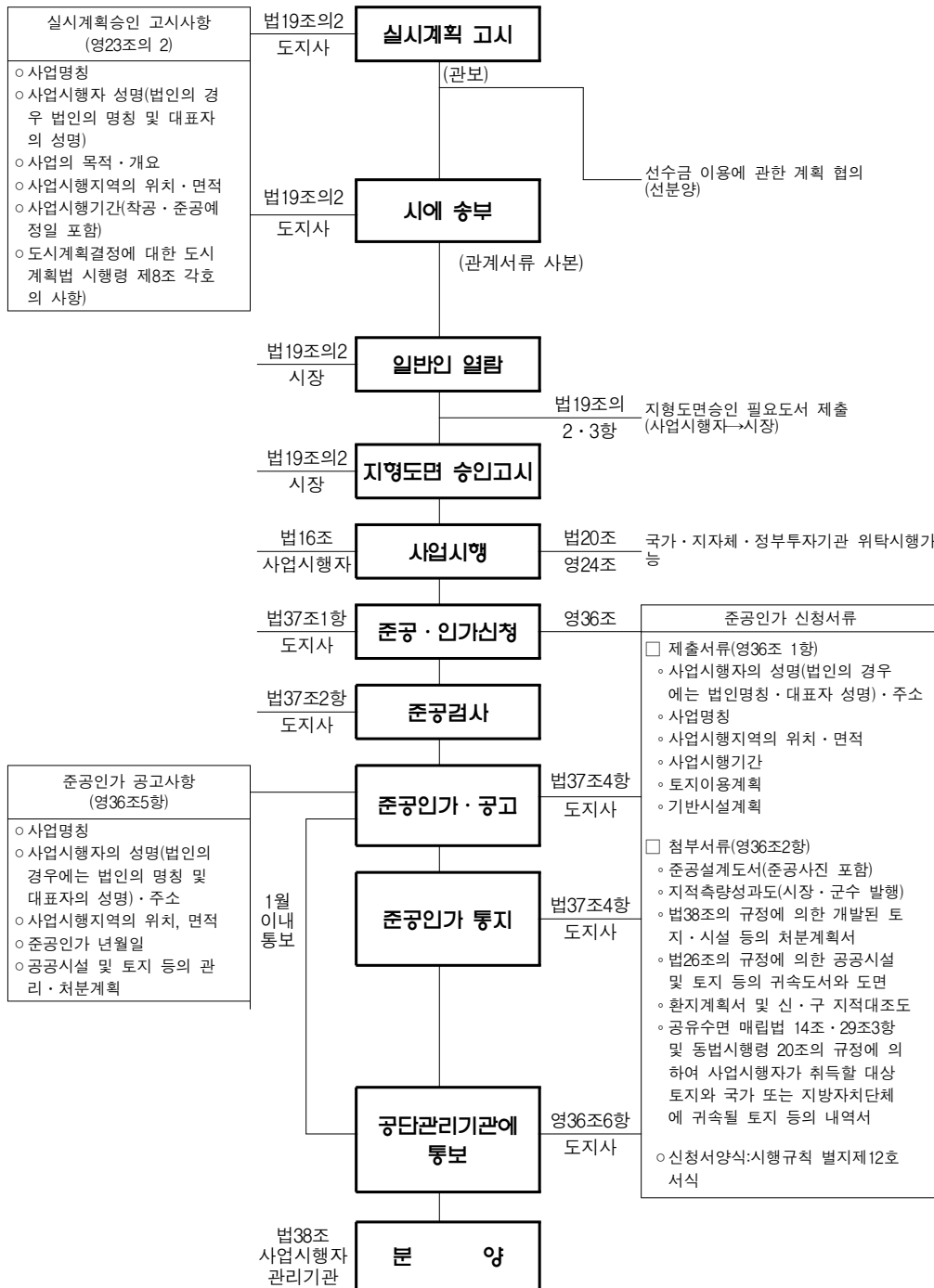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1. 김동욱,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 세미나, 2007.11.9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2007
3.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4
4.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업무편람, 2007
5. 경남발전, 경남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육성을 위한 제언, 2007
6.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년도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5
8. 제주도, 행정총람, 2007
9. 제주도, 통계연보, 2006
10.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광역도시기본계획, 2007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2006
12. 한국토지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 2003
13.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매뉴얼, 2005
14.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부록 1. 지방산업단지 지정 · 개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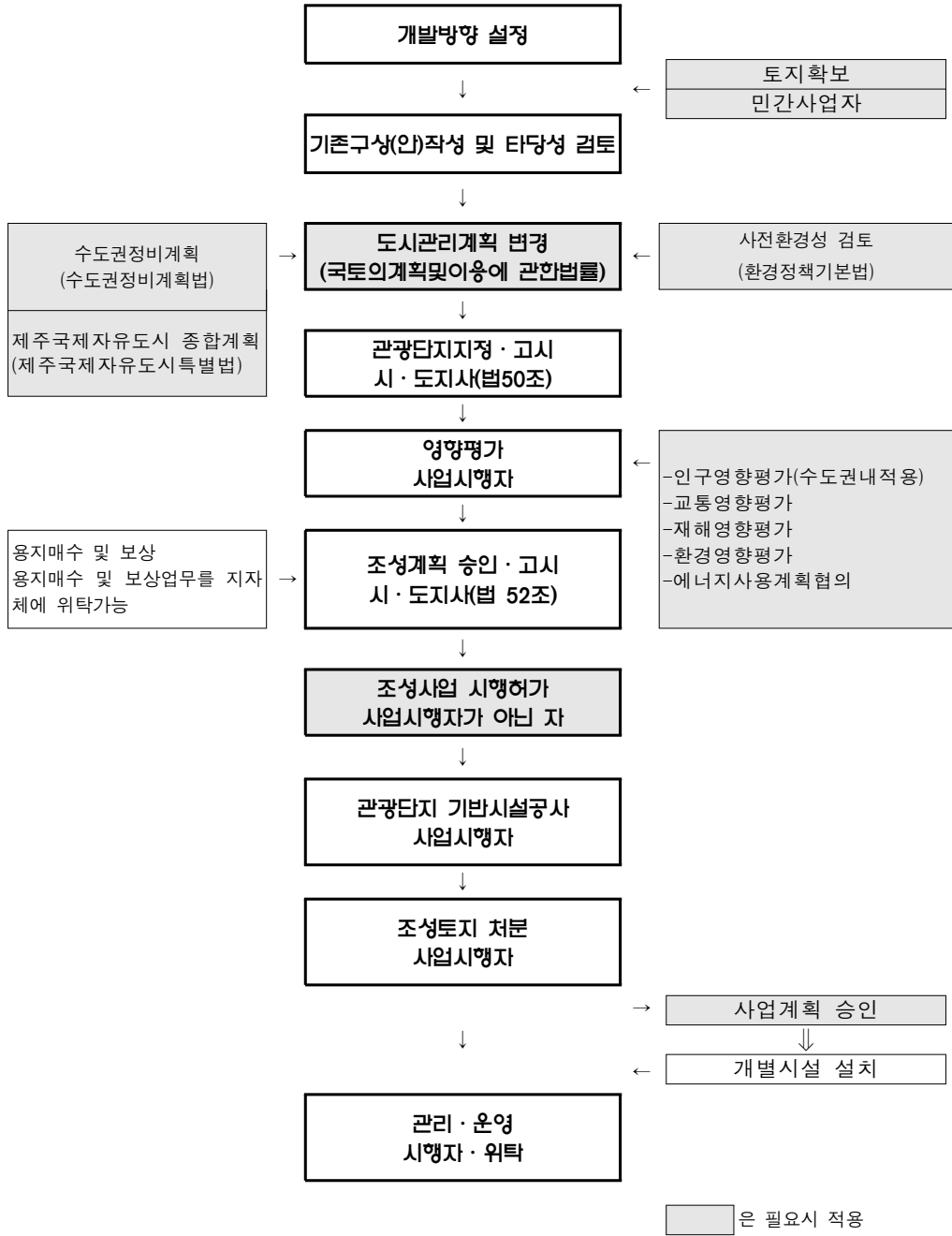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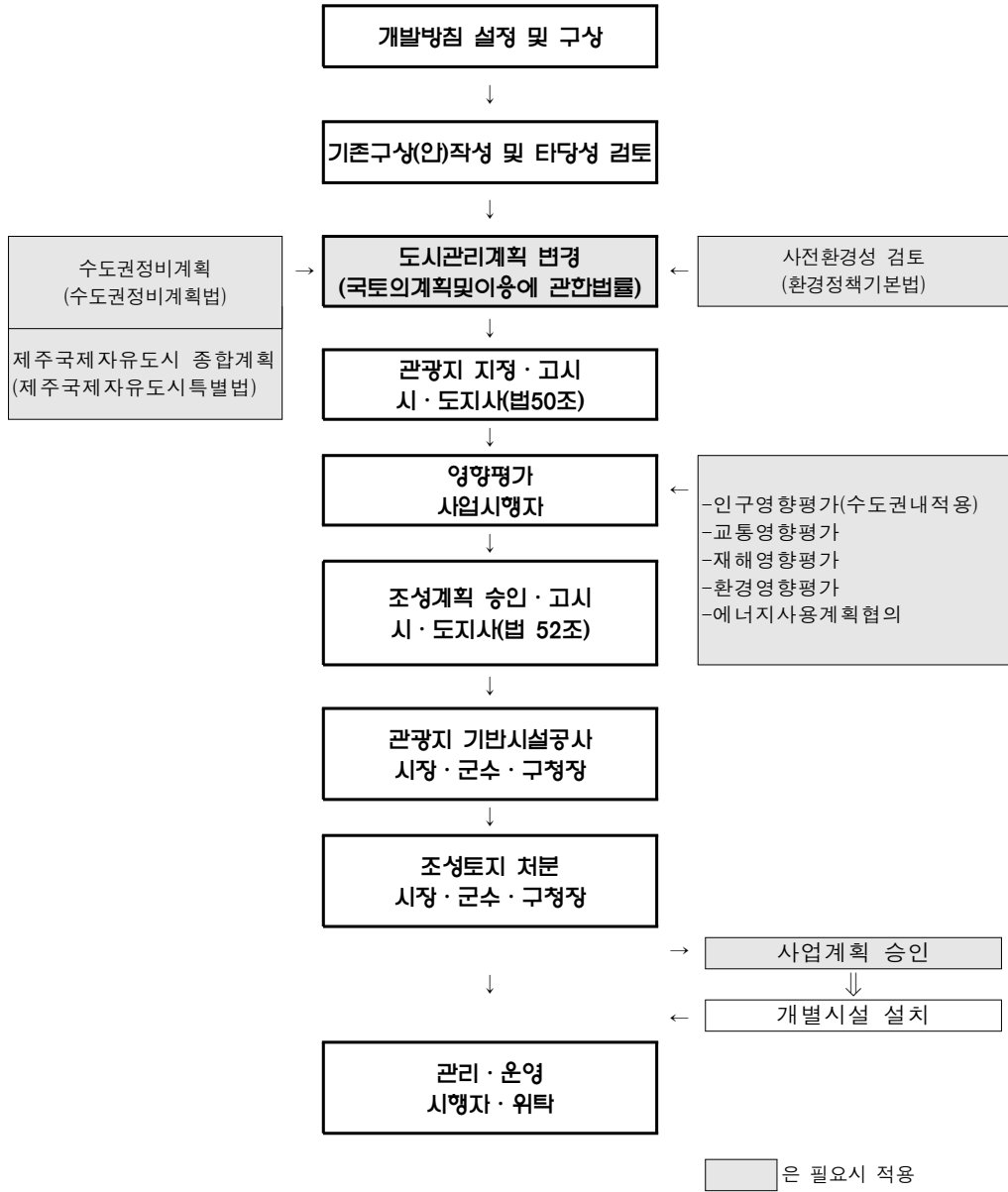


주) 그림 중에서 “법·영·규칙”이라는 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규칙”을, 그리고 “지침”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각각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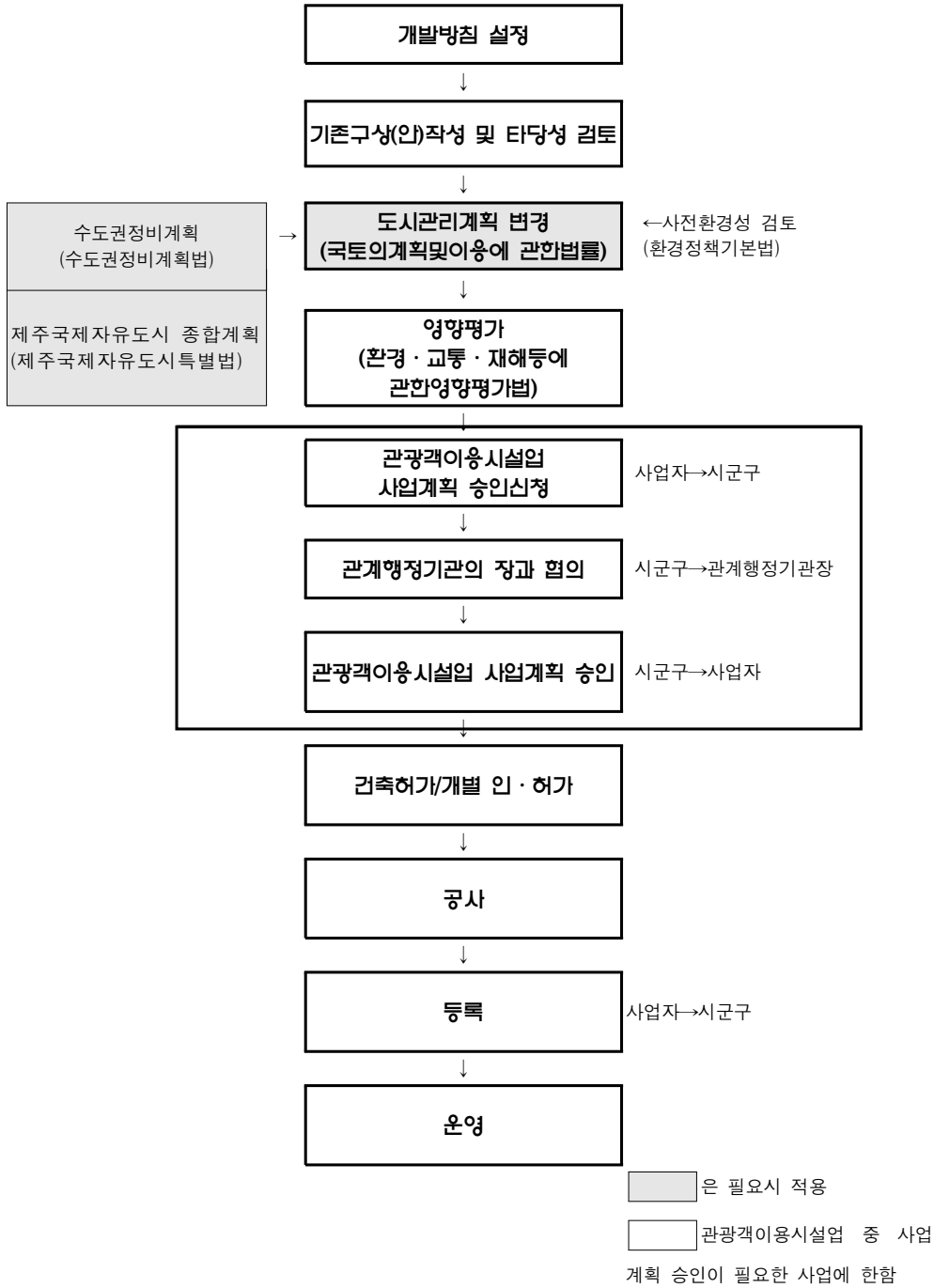
부록 2. 관광단지 개발절차



부록 3. 관광지 개발절차



부록 4. 관광객이용시설 개발절차



부록 5.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및 용적률

구 분		건폐율(%)		용적률(%)		
		국토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국토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용도 지역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	50이하	40이하	50이상-100 이하	80이하
		제2종전용주거	50	40이하	100-150	120이하
		제1종일반주거	60	60이하	100-200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	60	60이하	150-25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	50	50이하	200-300	300이하
		준주거	70	70이하	200-500	500이하
	상업 지역	중심상업	90	80이하	400-1,500	1,300이하
		일반상업	80	80이하	300-1,300	1,300이하
		근린상업	70	70이하	200-900	700이하
		유통상업	80	70이하	200-1,100	700이하
	공업 지역	전용공업	70	70이하	150-300	200이하
		일반공업	70	70이하	200-350	300이하
		준공업	70	70이하	200-400	300이하
	녹지 지역	보전녹지	20	20이하	50-80	60이하(자연취락지구 안 80이하)
		생산녹지	20	20이하	50-100	60이하(자연취락지구 안 100이하)
		자연녹지	20	20이하	50-100	80이하(자연취락지구 안 100이하)
	관리 지역	보전관리	20	20이하	50-80	60이하(자연취락지구 안 80이하)
		생산관리	20	20이하	50-80	60이하(자연취락지구 안 80이하)
		계획관리	40	40이하	50-100	80이하(자연취락지구 안 100이하)
		농림지역	20	20이하	50-80	5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20이하	50-80	50이하
용도 지구 및 기타 지역	취락지구	60	60이하, 녹지지역은 50이하	-	-	
	도시지역외 개발진흥지구	40	40이하	150	10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40이하	80	80이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20이하	100	80이하	
	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보호구역	-	-	150	100이하	
	농공단지	60	20이하	150	150이하	
	유원지	-	60이하	-	200이하	
	국가산업단지	80	80이하	-		
지방산업단지	80	80이하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2007.5.9),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건폐율만 있고 용적률 기준이 없음

부록 5. 전국의 특구 지정현황('07. 8월말 현재)

시·도	시군구	특구명칭	신청일	지정일자 (고시기준)	구분	승인번호
전북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04.10.28	1차 지정 (‘05.1.3)	2	2004-1
	고창군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04.11.12	1차 지정 (‘05.1.3)	3	2004-2
	고창군	고창 관광농업특구	04.11.12	1차 지정 (‘05.1.3)	4	2004-3
전남	순천시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04.11.17	1차지정 (‘05.1.3)	5	2004-4
대구	중구청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04.11.19	1차 지정 (‘05.1.3)	6	2004-5
제주	남제주군	국토최남단마라도 청정 자연환경경보호특구	04.12.10	1차 지정 (‘05.1.3)	7	2004-6
전남	여수시	여수 오선리조트특구	04.11.10	2차지정 (‘05. 2.11)	8	2005-1
전북	익산시	익산 한양방의료·연 구단지특구	04.11.12	(3차계획 변경)	9	2005-2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 양레저특구	04.11.10	2차 지정 (‘05. 2.11)	10	2005-3
경남	창녕군	창녕외국어교육특구	04.11.12	2차지정 (‘05. 2.11)	11	2005-3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04.11.18	3차 지정 (‘05. 4.30)	12	2005-5
강원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 건강산업특구	04.12.29	3차 지정 (‘05. 4.30)	13	2005-6
충북	제천시	제천약초웰빙특구	05. 3. 4	3차 지정 (‘05. 4.30)	14	2005-7
경북	영양군	영양반딧불이생태 체험마을특구	05. 3.25	3차 지정 (‘05. 4.30)	15	2005-8
경남	산청군	산청지리산약초 연구발전특구	05. 3. 7	3차 지정 (‘05. 4.30)	16	2005-9
인천	서구청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05. 3.30	3차 지정 (‘05. 4.30)	17	2005-10
전북	완주군	완주모악여성 한방클리닉특구	04.12. 8	4차지정 (‘05. 7. 5)	18	2005-12
경남	의령군	의령친환경 레포츠파크특구	05. 3.24	12차확대 변경(‘07.)	19	2005-13
경기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05. 3.31	4차지정 (‘05. 7. 5)	20	2005-14
강원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 훈련장특구	05. 4. 6	4차지정 (‘05. 7. 5)	21	2005-15
충북	괴산군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05. 4.11	4차지정 (‘05. 7. 5)	22	2005-16

시·도	시군구	특구명칭	신청일	지정일자 (고시기준)	구분	승인번호
전남	곡성군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특구	05. 4.29	(7차특례 변경)	23	2005-17
경북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05. 5.16	(11차특례 변경)	24	2005-18
서울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	05. 5.27	4차지정 (’05. 7. 5)	25	2005-19
전북	완주군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05. 4. 6	5차지정 (’05. 9.13)	26	2005-20
전북	남원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 산업특구	05. 6.13	(8차확대 변경)	27	2005-21
강원	강릉시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05. 6.23	5차지정 (’05. 9.13)	28	2005-22
경북	상주시	상주 꽃감특구	05. 6.29	5차지정 (’05. 9.13)	29	2005-23
충남	논산시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07. 6.7	12차지정 (’07. 7.25)	-	-
경남	함양군	함양 지리산약초 건강식품특구	05. 6.30	(6차명칭 변경)	30	2005-24
경북	영천시	영천 한방진흥특구	05. 7. 6	5차지정 (’05. 9.13)	31	2005-25
충북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05. 7.14	5차지정 (’05. 9.13)	32	2005-26
전북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특구	05. 7.12	6차지정 (’05. 12.13)	33	2005-27
대구	중구청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05. 9. 5	6차지정 (’05. 12.13)	34	2005-28
충북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05. 9. 6	6차지정 (’05. 12.13)	35	2005-29
충북	옥천군	옥천 옷산업특구	05. 9. 9	6차지정 (’05. 12.13)	36	2005-30
경북	영덕군	영덕 대게 특구	05. 9.13	6차지정 (’05. 12.13)	37	2005-31
충북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 산업특구	05. 9.21	6차지정 (’05. 12.13)	38	2005-32
경기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05.10.12	6차지정 (’05. 12.13)	39	2005-33
경기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05. 10. 14	6차지정 (’05. 12.13)	40	2005-34
경남	거창군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05. 10. 19	6차지정 (’05. 12.13)	41	2005-35
경남	김해시	김해 평생교육특구	05. 10. 20	6차지정 (’05. 12.13)	42	2005-36
전남	여수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특구	04 . 11. 10	7차지정 (’06. 3. 8)	43	2006-1
충북	단양군	단양 석회석 산업발전특구	05. 10. 6	7차지정 (’06. 3. 8)	44	2006-2

시·도	시군구	특구명칭	신청일	지정일자 (고시기준)	구분	승인번호
경남	남해군	남해 귀향마을특구	05. 10. 27	7차지정 (’06. 3. 8)	45	2006-3
경북	김천시	김천 포도산업특구	05. 12. 26	7차지정 (’06. 3. 8)	46	2006-4
경북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05. 12. 29	7차지정 (’06. 3. 8)	47	2006-5
경남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06. 1. 6	7차지정 (’06. 3. 8)	48	2006-6
전남	곡성군	곡성 21세기농촌 교육선진화특구	06. 1. 6	7차지정 (’06. 3. 8)	49	2006-7
충북	음성군	음성 다울찬 친환경수박특구	06. 1. 5	8차지정 (’06. 6.27)	50	2006-9
경북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06. 1. 9	8차지정 (’06. 6.27)	51	2006-10
전남	여수시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06. 1.20	8차지정 (’06. 6.27)	52	2006-11
인천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06. 1.23	8차지정 (’06. 6.27)	53	2006-12
전남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06. 1.25	8차지정 (’06. 6.27)	54	2006-13
경기	고양시	고양화훼 산업특구	06. 1.26	8차지정 (’06. 6.27)	55	2006-14
충남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06. 2.17	8차지정 (’06. 6.27)	56	2006-15
경북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06. 2.17	8차지정 (’06. 6.27)	57	2006-16
전북	부안군	부안 영상문화특구	06. 3.23	8차지정 (’06. 6.27)	58	2006-17
경북	울진군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06. 3.24	8차지정 (’06. 6.27)	59	2006-18
경기	연천군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06. 4. 3	9차지정 (’06. 9.18)	60	2006-19
충남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06. 4.27	9차지정 (’06. 9.18)	61	2006-20
전북	부안군	부안 누에타운특구	06. 6.12	9차지정 (’06. 9.18)	62	2006-21
전남	장흥군	장남진 장흥생 약초한방특구	06. 6.27	9차지정 (’06. 9.18)	63	2006-22
울산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06. 8. 3	9차지정 (’06. 9.18)	64	2006-23
경북	상주시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06. 8. 3	9차지정 (’06. 9.18)	65	2006-24
대구	북구청	대구 안경산업특구	06. 8. 7	9차지정 (’06. 9.18)	66	2006-25
강원	화천군	화천 평화·생태특구	06. 9.11	10차지정 (’06.12.28)	67	2006-27

시·도	시군구	특구명칭	신청일	지정일자 (고시기준)	구분	승인번호
강원	홍천군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06. 9.18	10차지정 (’06.12.28)	68	2006-28
경북	김천시	김천 자두산업특구	06.10. 9	10차지정 (’06.12.28)	69	2006-29
강원	원주시	원주 옷·한지산업특구	06.10.27	10차지정 (’06.12.28)	70	2006-30
충남	논산시	논산 양촌곶감특구	06.11.6	10차지정 (’06.12.28)	71	2006-31
경기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06.11.13	10차지정 (’06.12.28)	72	2006-32
전남	강진군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06.11.17	10차지정 (’06.12.28)	73	2006-33
전북	부안군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특구	06.11. 3	11차지정 (’07. 4.27)	74	2007-1
충북	영동군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06.11.28	11차지정 (’07. 4.27)	75	2007-2
부산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06.11.30	11차지정 (’07. 4.27)	76	2007-3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06.12. 6	11차지정 (’07. 4.27)	77	2007-4
전북	김제시	김제 총채보리 한우산업특구	07. 1.24	11차정정 (’07. 4.27)	78	2007-5
경북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07. 1.26	11차지정 (’07. 4.27)	79	2007-6
경북	영양군	영양 고추산업특구	07. 2.13	11차지정 (’07. 4.27)	80	2007-7
경남	고성군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06. 9.27	11차지정 (’07. 4.27)	81	2007-8
경남	고성군	고성 조선산업특구	06.12.26	12차지정 (’07. 7.25)	82	2007-9
충북	청주시	청주직지문화특구	07. 3.30	12차지정 (’07. 7.25)	83	2007-10
경북	영주시시	영주 글로벌 인재양성특구	07. 4.12	12차지정 (’07. 7.25)	84	2007-11
경북	봉화군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07. 5. 9	12차지정 (’07. 7.25)	85	2007-13
부산	동 구	부산동구차이나타운 지역발전특구	07. 5.16	12차지정 (’07. 7.25)	86	2007-14
경북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 산업특구	07. 5.18	12차지정 (’07. 7.25)	87	2007-15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이 성 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	---------------------

핵심산업육성촉진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방안

인 쇄 일	2007. 12.
발 행 일	2007. 12.
발 행 인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일신옵셋인쇄사(☎ 064-758-1500)

ISBN 978-89-6010-042 8 9353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無斷 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